

제14호 2015



군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열린의회

의회소식



고흥군의회
GOHEUNG COUNTY COUNCIL

군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열린의회 **고흥군의회**

의 정 목 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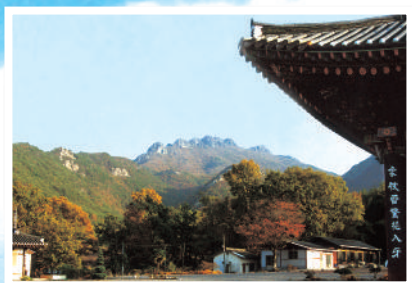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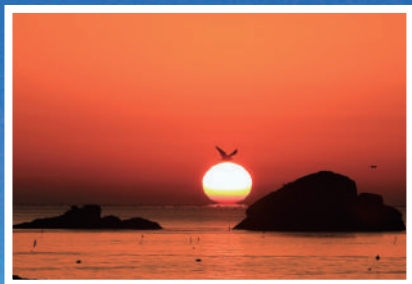


군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열린 의회

의정운영 방침



- 확고한 자치기반 구축
- 현장 중심 의정활동 강화
- 민의수렴을 통한 열린의정 실현
- 견제와 균형의 내실의정 구현



contents

04 발간사

06 제7대 전반기 원구성 현황

10 회의운영 및 의안처리 현황

11 회기별 안건처리 현황

41 군정질문 및 답변

60 의정활동 스케치

69 2015년도 회의(정례회 · 임시회) 운영계획

· 발 행 인 : 고흥군의회위원장 장세선
· 발 행 처 : 고흥군의회
· 편 집 인 : 의회사무과장
· 주 소 : 전남 고흥군 고흥읍 흥양길 40
· 전 화 : 061) 835-1228
· F A X : 061) 830-5595
· 홈페이지 : <http://www.igoheung.com>



발 간 사



고흥군의의회

의장 **장 세 선**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의회에 높은 관심과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7만 고흥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권익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6월 4일 지방선거를 통하여 제7대 의회가 새롭게 출범 하는 뜻깊은 한해였습니다. 제7대 의원 12명은 법과 원칙을 준수하면서 민의를 대변하겠노라고 군민 앞에 엄숙히 선서하고 군민을 위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자 최대한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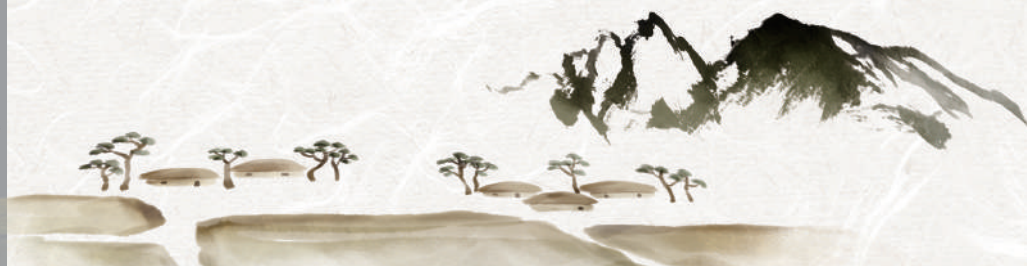
현재 우리가 사는 글로벌 시대는 우리 모두 지식 정보화와 개방화의 거센 물결 속에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해가는 무한 경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을 구현하기 위해 고흥군의의회 주요 의정활동 상황을 정리한 14호 의회소식지를 발간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 하면서, 지방자치와 고흥군의의회 운영을 이해하는 데 유익한 참고자료로 널리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고흥군의의회가 진정 군민들로부터 사랑과 지지를 받는 의회, 주민들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주민들의 아픔과 불편을 씻어주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의회, 전문성을 갖고 대안을 만들어 가는 의회로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시 견제의 기능에도 충실히 하여 지방자치 발전은 물론 우리 고흥을 살기 좋은 선진 고흥으로 가꾸어 나가는데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아 나갈 것입니다.

본 책자가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고흥군의의회가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새롭게 변화해 가고 한층 더 성숙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들의 더욱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흥군 상징물

| 고흥군 심볼마크 상징의미 |

- 고흥군 심볼은 3면이 바다인 고흥군의 지리적인 특성과 역사, 경제, 문화를 바탕으로 미래로 힘차게 전진하는 고흥군의 이미지와 우주센터를 모티브로 형상화 하였다.
- 길게 꼬리를 물고 힘차게 솟구치는 이나설 G는 일등 고흥, 세계 최고의 고장 고흥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며, 고흥의 번영과 국민정기의 원천임을 나타내며, 또한 힘차게 치솟는 형태는 고흥군의 진취적인 기상을 표현함과 동시에 우주로 발사되는 우주선의 역동적인 힘을 느끼게 하고 생동감이 넘치는 고흥군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 솟아오른 듯 봉긋한 세개의 타원은 발전된 고흥의 이미지와 풍요롭고 여유있는 삶을 영위하는 공동체로서의 고흥군을 의미하며, 군과 군민들의 화합을 상징한다.



| 고흥군 심볼마크 색상의의미 |

- **청색** : 때묻지 않은 깨끗한 바다와 쾌적한 환경으로서의 자연의 고장임을 상징.
- **주황** : 진취적인 기상과 끊임없는 열정으로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군민을 상징 하며, 빛과 생명을 의미한다.



| 캐릭터 |

- 외로 & 나로 : 외나로도에 우리나라 최초로 건립된 나로 우주센터를 모티브로 디자인 하였다. 외로와 나로는 나로우주센터의 다양한 홍보 및 교육 등을 안내하는 도우미로서 항상 웃음을 잃지 않는 다정다감한 미소와 따뜻함이 우리 고흥군민의 모습을 보여준다.

| 군목 / 유자나무 |

- 발육성이 좋고 병충해에 강하여 군민에게 풍요와 복지를 약속해 주는 과수로 늦 가을 고흥 들녘엔 그 풍성한 열매와 고운 향이 가득하여 다가 올 겨울이 넉넉하기만 하다.



| 군화 / 동백꽃 |

- 용기와 승리 그리고 정열의 뜻을 담고 있어 홍색, 자색, 백색의 꽃이 우리 고을 곳곳에 피어나면 번영을 향한 군민의 기상과 정열이 푸르고도 붉다.



| 군조 / 비둘기 |

- 밝은 미래가 있어 희망이 있고, 희망이 있기에 평화가 깃드는 고흥. 그래서 고흥 사람들은 비둘기를 좋아하고 비둘기처럼 살고 싶어한다.





고흥군의회 소식 GOHEUNG County Council News

제7대 전반기 원구성 현황

의 장 단



의 장 장 세 선



부의장 김 의 규



《 제226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



전반기 원구성현황

회기별 의안처리 현황

군정질문 및 답변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송 우 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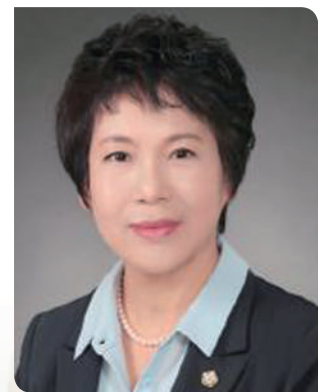
 간 사 안 정 민



 위 원 임 선 신



 위 원 정 중 열



 위 원 최 성 자





고흥군의회 소식 GOHEUNG County Council News

제7대 전반기 원구성 현황

총무위원회



위원장 임 선 신



간사 권영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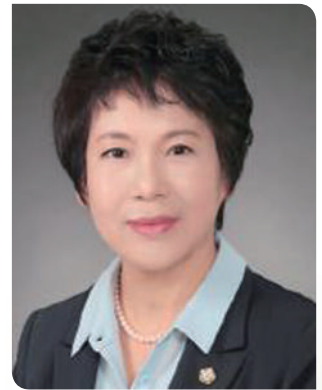
위원 정동우



위원 송우섭



위원 김의규



위원 최성자



전반기 원구성현황

회기별 의안처리 현황

군정질문 및 답변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 종 열



간사 김 재 열



위원 송 영 현



위원 정 순 열



위원 안 정 민





회의운영 및 의안처리 현황

회의운영 현황 (2013. 1. 1 ~ 2014. 12. 31)

연 도	구 분	기 간	일 수	비 고
2013	제212회 임시회	2013. 2. 05	1	
"	제213회 임시회	2013. 3. 11 ~ 3. 19	9	
"	제214회 임시회	2013. 4. 16 ~ 4. 17	2	
"	제215회 임시회	2013. 5. 21 ~ 5. 22	2	
"	제216회 임시회	2013. 6. 25 ~ 6. 27	3	
"	제217회 제1차정례회	2013. 7. 01 ~ 7. 12	12	
"	제218회 임시회	2013. 9. 23 ~ 9. 24	2	
"	제219회 임시회	2013. 10. 14 ~ 10. 25	12	
"	제220회 제2차정례회	2013. 11. 11 ~ 12. 17	37	
"	제221회 임시회	2013. 12. 18 ~ 12. 20	3	
2014	제222회 임시회	2014. 2. 12	1	
"	제223회 임시회	2014. 3. 10 ~ 3. 19	10	
"	제224회 임시회	2014. 4. 22 ~ 4. 23	2	
"	제225회 임시회	2014. 7. 1 ~ 7. 2	2	
"	제226회 제1차정례회	2014. 7. 21 ~ 7. 31	11	
"	제227회 임시회	2014. 9. 23 ~ 9. 24	2	
"	제228회 임시회	2014. 10. 14 ~ 10. 27	11	
"	제229회 제2차정례회	2014. 11. 10 ~ 12. 18	39	
"	제230회 임시회	2014. 12. 19 ~ 12. 23	3	

의안처리 현황 (2013. 1. 1 ~ 2014. 12. 31)

연 도	계	조례안	예산결산안	승인·동의안	결의안	기 타
계	151	108	5	10	2	26
2013	69	51	2	5	-	11
2014	82	57	3	5	2	15



회기별 의안처리 현황

전반기 원구성현황

회기별 의안처리 현황

군정질문 및 답변

의정활동 스케치



제212회 임시회 (2013. 2. 05)

☐ 2012년도 읍면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계획 승인의 건

(2013. 1. 30 총우섭의원 등 5인 발의)

- 2012년도에 읍면에서 발주 시행한 각종 시설공사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과 예산집행 상황 등 공사추진 전반에 걸쳐
- 서류검토와 현지확인 조사를 실시, 건설시공 여부 등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 개선하도록 함으로써 부실공사 예방과 군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2013. 2. 04 군수제출, 2. 04 총무위원회 회부, 원안가결)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의 합리화를 위해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작성 고흥군의회 의결을 받기 위함.

☐ 고흥우주항공클러스터 구축 촉구를 위한 성명서 채택의 건

(2013. 2. 04 군수제출, 2. 04 의회운영위원회 회부, 원안가결)

- 지난 1월 30일 온 국민이 염원했던 우리나라 첫 우주발사체 나로호 인공위성이 우리 땅 나로우주센터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되는 쾌거를 거두었음.
- 이로써 그동안 줄기차게 추진했던 고흥우주항공클러스터 구축사업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이며, 미래 전략사업인 우주항공산업의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에 의한 권역별 역할 분담이 필요함.
- 따라서 고흥군의회는 군민과 더불어 고흥우주항공클러스터 사업의 조속한 구축을 위해 정부에 대하여 국가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함.



제213회 임시회 (2013. 3. 11 ~ 3. 19)

☐ 고흥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13. 3. 07 군수제출, 3. 07 산업건설위원회 회부, 원안가결)

- 지구온난화로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지역간의 편차가 심하여 산사태발생위험이 매우 높아짐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관리함은 물론 산림예방사업을 시행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기능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고흥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13. 3. 07 군수제출, 3. 07 산업건설위원회 회부, 원안가결)



회기별 의안처리 현황

- 지진에 의한 시설물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제정하고자 함.

☑️ **고흥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 3. 07 군수제출, 3. 07 산업건설위원회 회부, 수정가결)

- 재난발생시 긴급하게 필요한 심리안정지원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비용을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고흥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를 개정.

☑️ **고흥농업기술센터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2013. 3. 07 군수제출, 3. 07 산업건설위원회 회부, 수정가결)

-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술보급, 대농민 교육훈련, 영농후계자 양성 및 청소년 지도 등 지자체별 농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 주민의 농업기반 조성을 목표로 하는 행정기관으로서 현재 고흥읍(센터)과 풍양면(연구단지)으로 이원화되어 운영중에 있음
- 농업기술센터를 농업현장으로 이전·신축함으로써 첨단 시험연구시설 확충 및 기술개발 기능강화로 지역농업 발전을 선도하고, 친환경 영농기술 교육장 및 세미나실 등의 군민을 위한 편의시설을 제공코자 함
- 따라서 농업기술센터 이전으로 청사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 군민의 편의 제공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관리계획의 입안)에 의거하여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군계획시설)을 입안코자 함.

☑️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2013. 3. 07 군수제출, 3. 07 산업건설위원회 회부, 수정가결)

- 고흥 전통시장은 근교에서 생산자가 재배한 농산물을 소비자와 직거래로 상거래 행위가 이루어지고, 고흥군의 주요 재래시장으로서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나,
- 낙후된 시설 및 열악한 시장 환경으로 인해 상인, 시장 이용객 및 지역 주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시장 활성화의 저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 낙후된 시장시설의 현대화 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 및 시행을 위하여 군계획시설 중 시장으로 결정하고자 함.

☑️ **고흥생활체육야구장 조성을 위한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2013. 3. 07 군수제출, 3. 07 산업건설위원회 회부, 수정가결)

- 주민건강증진과 여가활동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증대되는 웰빙문화시대에 대체적으로 체육복지에서 소외되어 온 남부지역 주민들을 위한 생활체육 공간 확보의 필요성이 대두되어왔으며,
- 지역주민의 공공복리 증진 및 삶의 질을 향상과 주변 생활체육시설물(김일체육관)과 상호연계를 통한 시설물 활용도 증대로 군민 여가활동 증진에 이바지 하며,
- 군민들의 건강과 체력증진, 건전한 여가문화의 형성과 전국 규모의 체육대회 및 국내 초·중·고·대학, 프로구단의 전지훈련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바다송어·연어 산업연구센터 건축 동의안**

(2013. 3. 07 군수제출, 3. 07 산업건설위원회 회부, 수정가결)

- 전라남도 해양수산물과학원 고흥지소에서 재해(태풍, 적조, 동해 등)없는 겨울철 양식품종 개발과 안정적 종묘 수급을 통하여 관내 어류양식어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바다송어·연어 산업연구센터」를 우리군 소유 구 금산초교 서분교장 (금산면 신촌리 1123-5번지 등 11필지) 부지에 건립하고자 하여
- 고흥군 소유토지에 고흥군 이외의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 제11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합의 및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 고흥군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

☑ 2012년도 읍면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

(2013. 3. 18 송우섭의원 등 5인 발의)

- 제213회 임시회 회기중 실시한 2012년도 읍면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 도출된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 개선하도록 집행부에 통보하여 조치결과를 보고하도록 함.

**제214회 임시회 (2013. 4. 16 ~ 4. 17)****☑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2013. 4. 08 의회운영위원장제출, 4. 08 총무위원회 회부, 원안가결)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의 합리화를 위해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작성 고흥군의회 의결을 받기 위함

☑ 고흥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 4. 11 군수제출, 4. 11 총무위원회 회부, 원안가결)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근로능력판정에 있어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근로능력평가 및 재평가의 결과에 대해 보다 정밀한 심의와 조정을 위해 근로능력판정 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
- 근로능력판정 조정위원회는 고흥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신하며, 협의체내 소위원회로 구성

☑ 고흥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2013. 4. 11 군수제출, 4. 11 총무위원회 회부, 원안가결)

- 개정된「국민건강증진법」가운데 금연에 관한 조항을 우리군 실정에 맞게 실현하는 법적 근거 마련

☑ 고흥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 운영 조례안

(2013. 4. 11 군수제출, 4. 11 산업건설위원회 회부, 원안가결)

- 현행 유용미생물 무상공급으로 인한 정량을 초과한 사용남발 방지
- 무상수령 후 미사용·방치로 인한 농가 폐기물량 절감, 실수요자에 대한 공급으로 전환

회기별 의안처리 현황



제215회 임시회 (2013. 5. 21 ~ 5. 22)

☞ 고흥군 테마의 섬 진지도 민박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2013. 5. 16 군수제출, 5. 16 총무위원회 회부, 원안가결)

- 농어촌 소득증대와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된 체류형 체험관광시설 (한옥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 마련
- 한옥 및 일반민박시설의 관리자 지정 및 이용료 징수 관련 규정을 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 고흥군 농촌진흥 및 농업인육성 지원 조례안

(2013. 5. 16 군수제출, 5. 16 산업건설위원회 회부, 원안가결)

- 「농촌진흥법」에 의하여 우리군의 기본산업인 농업의 발전과 경쟁력 제고 및 농촌 활력화를 도모하기 위한 농촌지도사업, 시험연구사업, 농업인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고흥군 조직배양 우량씨감자 관리 운영 조례안

(2013. 5. 13 군수제출, 5. 13 산업건설위원회 회부, 원안가결)

- 조직배양 우량씨감자 자체생산 및 공급으로 정부 보급 씨감자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관내 감자재배 농업인들에게 우량씨감자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



제216회 임시회 (2013. 6. 25 ~ 6. 27)

☞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 6. 13 군수제출, 6. 13 총무위원회 회부, 원안가결)

- 정부의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한「시·군 안전조직 개편 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안전관리 체계를 통합 구축하여 군민의 안전과 지방행정의 역량 제고를 위해「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 고흥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 6. 13 군수제출, 6. 13 총무위원회 회부, 원안가결)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수당 지급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 고흥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 6. 13 군수제출, 6. 13 총무위원회 회부, 원안가결)

- 2013년「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하게 하고 주택분 재산세 부과에 명확한 근거를 두고자 함.

**☑ 고흥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 6. 13 군수제출, 6. 13 산업건설위원회 회부, 원안가결)

- 조직개편에 의한 업무분장 변동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 고흥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2013. 6. 13 군수제출, 6. 13 산업건설위원회 회부, 원안가결)

- 수도공사 및 수도시설 손괴 등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 수도 공사 등에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재정손실을 예방하고 수도 사용자 주의 및 경각심 고취하고자 함.

☑ 2013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3. 6. 18 군수제출, 6. 2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원안가결)

- 2013년 당초예산 편성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정리조정, 경상경비 및 행사·축제성 경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은 의무 절감하여 재해예방·서민생활 안정사업에 재투자하여 재정운영 도모하고자 함.

**제217회 제1차정례회 (2013. 7. 01 ~ 7. 12)****☑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2013. 6. 21 군수제출, 6. 27 총무위원회 회부, 원안가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의 합리화를 위해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작성 고흥군의회 의결을 받기 위함

☑ 사단법인 고흥영상문화위원회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13. 6. 27 군수제출, 6. 27 총무위원회 회부, 원안가결)

- 지역 내 영상문화·교육·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 및 국내외 영상물 제작·촬영 유치·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 단편영화제 개최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조직을 구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고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 6. 27 군수제출, 6. 27 총무위원회 회부, 원안가결)

- 현행「지방자치법」제139조제1항 단서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는 대통령령인「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코자 함.



회기별 의안처리 현황

- 낚시어선법, 내수면어업법, 수산업법, 어선법 규정에 따른 수수료 중 13종 수수료가 누락되어 신설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47조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 중 분사무소 설치신고에 따른 수수료가 누락되어 3종 신설

☑️ **고흥군 시호도 원시체험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 6. 27 군수제출, 6. 27 총무위원회 회부, 원안가결)

- 도선료가 포함된 시설 입장료를 타 시설입장료와 비교하여 도선이용의 특성이 반영되도록 체험시설 입장요금을 현실화 하고,
- 탄력적인 시설 운영을 위한 세부 운영규정 마련의 제도적 근거를 반영하고자 함.

☑️ **201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13. 6. 28 군수제출, 7. 0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원안가결)

- 「지방자치법」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결산 감사위원의 감사와 「지방재정법」제53조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재무보고서를 고흥군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고자 함.



제218회 임시회 (2013. 9. 23 ~ 9. 24)

☑️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 9. 12 군수제출, 9. 12 총무위원회 회부, 원안가결)

- 「농어촌 등 보건의를료 위한 특별조치법」개정에 따른 보건진료소장의 직위를 신설하고,
- 전라남도로부터 우주항공 클러스터 구축 등 지역 전략산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우주항공사업소 한시기구 연장승인”이 통보됨에 따라 부칙 내용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 **고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 9. 12 군수제출, 9. 12 총무위원회 회부, 원안가결)

- 「“사무분야 기능직”인력을 감축하여 새로운 행정수요 및 조직·인력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시험 합격자의 정원을 일부 개정하여 기능직 비율을 조정하고,
- 고흥덤벙분청문화관 건립 추진 및 운영에 따라 전문지식을 갖춘 학예연구사(1명)를 채용하여 소장 유물의 상설 전시 및 보존처리와 우리군 역사 문화의 계승 발전을 위해 정원 일부를 개정하고,
- 고흥특화작목연구단지 운영 및 기후변화에 따른 경쟁력 있는 새로운 소득작물 발굴을 위해 농업연구사(원에 1명)를 증원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정원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 고흥군 저소득층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13. 9. 12 군수제출, 9. 12 총무위원회 회부, 원안가결)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고흥군 거주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만성퇴행성관절염으로 인한 무릎인공관절수술비를 지원함으로써 노인들의 경제적 부담의 경감 및 건강한 노후생활 영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고흥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2013. 9. 12 군수제출, 9. 12 총무위원회 회부, 원안가결)

- 고흥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군민 자살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고흥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013. 9. 12 군수제출, 9. 12 총무위원회 회부, 원안가결)

- 「지역보건법」제9조 및 「정신보건법」제13조에 따라 고흥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흥군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함.

☑ 고흥군 농어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

(2013. 9. 12 군수제출, 9. 12 산업건설위원회 회부, 원안가결)

- 우리군 기본산업인 농어업발전과 농어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농번기철 농어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고흥 덩방 분청공원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결정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2013. 9. 12 군수제출, 9. 12 산업건설위원회 회부, 원안가결)

- 역사의식이 난삽한 이 시대에 고흥 운대리 도요지를 중심으로 문화재 원형보존의 가치아래 고흥의 모든 역사문화 공간을 확보(중)하여 대내외에 부각시킴으로써 지역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국가적 문화 관광의 견인차 역할을 통해 유무형의 예술, 정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자 함
- 또한 설화문학의 대가인 류몽인에 대한 재발견과 그를 활용한 문화 콘텐츠 사업은 고흥인의 고품격 생활과 삶의 질을 높여주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후세들에게 무한한 자긍심과 긍지를 심어준은 물론 고흥을 설화문학 부동의 성지로 자리매김 하고자
- 고흥군이 문화공원 기능을 효율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계획적인 개발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군 계획시설(문화공원)결정이 필요함에 따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같은법 제30조(군관리계획의 결정), 제43조(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2조(공원), 제53조(공원의 결정기준 및 구조·설치기준)에 의거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코자 함

☑ 2012년도 군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계획 승인의 건

(2013. 9. 23 송우섭의원 등 5인 발의)

- 2012년도 군 발주 시설공사 및 민간자본보조사업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
- 사업추진의 타당성과 견실시공 여부 등을 살펴, 모범사례는 권장하고 문제점은 시정 개선하여 부실공사 추방과 군민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회기별 의안처리 현황



제219회 임시회 (2013. 10. 14 ~ 10. 25)

☑️ **고흥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 10. 10 군수제출, 10. 10 총무위원회 회부, 원안가결)

- 고흥군 또는 고흥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각종 소송사건을 수행하는 소송수행자의 사기 양양과 책임감 및 자긍심 고취, 업무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현실과 맞지 않는 포상금 지급금액을 타 지자체와 비교하여 현실화하고,
-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급변하는 행정여건과 행정환경에 부합토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고흥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 10. 10 군수제출, 10. 10 총무위원회 회부, 원안가결)

- 공무원이 민원인 등과 함께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식사를 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관련 민원인 등을 포함하여 구내식당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청렴식권제도를 규정함으로써
- 청렴하게 근무할 수 있는 공직 여건을 조성하여 직원복지 및 업무생산성을 높이하고자 함.

☑️ **고흥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13. 10. 10 군수제출, 10. 10 총무위원회 회부, 원안가결)

- 출향인 및 향우회와 교류·협력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군민의 역량 결집과 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출향인을 통하여 우리 군의 농·특산물 판매와 전국에 축제, 행사 등을 적극 홍보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코자 함.

☑️ **고흥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13. 10. 10 군수제출, 10. 10 총무위원회 회부, 원안가결)

-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소유권 보호를 위해 토지의 실제경계와 일치하지 않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변경하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등「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고흥군 조례로 제정하여 원활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함.

☑️ **고흥군 명예군민증 수여 계획안**

(2013. 10. 10 군수제출, 10. 10 총무위원회 회부, 원안가결)

- 우리군과 특별한 인연을 맺고 군정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인사에게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기 위하여 “고흥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제3조에 의거 군의회 승인을 받고자 함.



☑ 고흥군 팔영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입장료 및 시설물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3. 10. 10 군수제출, 10. 10 산업건설위원회 회부, 원안가결)

- 고흥군 팔영산 일원이 2011. 1. 10일 도립공원에서 국립공원으로 승격됨에 따라 2011. 4. 20일 관리권이 고흥군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으로 이관되어 현재 운영되고 있음.
- 따라서,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2006. 12. 31.) 등 도립공원에서 국립공원으로 바뀌면서 수반되는 제반사항을 일제히 정비하여 팔영산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고흥 웰빙유자·석류특구 지정신청 의견 제시의 건

(2013. 10. 08 군수제출, 10. 08 산업건설위원회 회부, 원안가결)

- 고흥군은 국내에서 유자·석류의 최대 주산지이며 최적의 생산 적지로 생산력이 가장 높고, 비교우위의 지역의 강점을 가지고 있으나, 주로 유자차, 석류즙 등 단순가공 위주로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유통 및 가공 신기술 개발 등이 미흡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산업화를 통해 지역부존자원과 연계 관광활성화로 고부가가치 자원개발 등 유자와 석류의 특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 지구온난화현상 등 기후환경 변화에 따른 고흥 지역의 상황을 적극 활용하여 유자·석류산업의 생산·기술 지원체계를 연계한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고차원의 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연관상품 연구·개발을 통해 유자·석류산업의 비교적 우위를 확대하고자 함
- 이에따라 특구지정을 통해 지속가능한 기반을 마련하고 산업체계를 정비하여 유자·석류 산업의 비약적 발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하고자 함.

☑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2013. 10. 23 송우섭의원 등 5인 발의)

-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집행상황을 면밀히 파악, 군정시책과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 등에 반영하고,
- 위법부당 및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및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군정의 효율적 수행을 뒷받침하고 군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2012년도 군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



제220회 제2차정례회 (2013. 11. 11 ~ 12. 17)

☑ 고흥군 가축사육제한지역 및 공공처리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 11. 07 군수제출, 11. 07 산업건설위원회 회부, 원안가결)

-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하여 군민보건의 향상과 환경보전에 이바지 하고자 가축사육의 제한지역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나,



회기별 의안처리 현황

- 일부 축종의 악취발생 등 생활환경 침해민원이 빈번하고 분뇨 배출에 따른 혐오시설 인식으로 민원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군민의 생활환경 보호와 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일부 축종에 대하여 사육의 제한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고흥군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013. 11. 07 군수제출, 11. 07 산업건설위원회 회부, 원안가결)

- 기금의 용도에 따른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환경미화 종사자의 후생복지 비용으로 활용하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 규정하여 기금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고흥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 11. 07 군수제출, 11. 07 산업건설위원회 회부, 원안가결)

- 고흥읍 시가지의 혼잡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공영주차타워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군민의 주차편익제공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이용요금을 재조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2013. 11. 07 군수제출, 11. 07 총무위원회 회부, 원안가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의 합리화를 위해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작성 고흥군의회 의결을 받기 위함

☑️ **고흥 덩빙 분청 청소년수련시설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2013. 11. 15 군수제출, 11. 15 산업건설위원회 회부, 원안가결)

- 국내 관광환경의 특징적 변화는 점차 선진국형 여가문화가 확산되어 양보다 질을 중시하며 단순 소비형 여가활동에서 도구와 장비를 이용한 여가활동으로 변화되어가고 있으며 세분화, 전문화 되고 있음
- 관광여건 및 체험활동 변화에 발맞추어 고흥군은 덩빙 분청 도요지, 다도해상국립공원 등의 뛰어난 역사문화자원과 자연생태자원을 바탕으로 평면적 관광형태를 극복하고 변화되어가는 관광 트렌드에 부합
- 따라서 지역의 우수 자연환경이 융화되어 휴식 및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체험형 시설로 청소년수련시설(캠핑장)을 두원면 운대리에 조성하여, 변화하는 관광패턴에 적극 부응하는 차별화된 시설의 도입 및 서비스제공을 통한 청소년 및 가족단위 캠핑관광객을 유치하여 관광 활성화를 유도하고 지역주민의 직·간접적인 소득증대 및 관광고흥 이미지 제고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관리계획의 입안)에 의거하여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군계획시설)을 입안코자 함

☑️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3. 11. 22 군수제출, 12. 0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수정가결)

-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한 201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확정으로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

**☞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3. 11. 22 군수제출, 12. 0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원안가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2014회계연도 고흥군 각종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고흥군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고자 함

☞ 고흥 덩방 분청공원 조성을 위한 공원조성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2013. 12. 06 군수제출, 12. 06 산업건설위원회 회부, 원안가결)

- 역사인식이 난잡한 이 시대에 고흥 운대리 도요지를 중심으로 문화재 원형보 존의 가치아래 고흥의 모든 역사문화 공간을 확보(중)하여 대내외에 부각시킴으로써 지역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국가적 문화 관광의 견인차 역할을 통해 유·무형의 예술, 정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자 함
- 또한 설화문학의 대가인 류몽인에 대한 재발견과 그를 활용한 문화 콘텐츠 사업은 고흥인의 고품격 생활과 삶의 질을 높여주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후세 들에게 무한한 자긍심과 긍지를 심어준은 물론 고흥을 설화문학 부동의 성지로 자리매김 하고자
- 고흥군이 문화공원 기능을 효율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계획적인 개발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공원조성계획(문화공원)결정이 필요함에 따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규정 및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제16조(공원조성계획의 입안)에 의거, 군계획시설인 문화공원을 조성코자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자 함.

☞ 거금대교 과적운행차량 단속 및 관련시설 설치 건의안

(2013. 12. 12 군수제출, 12. 12 산업건설위원회 회부, 원안가결)

- 2011. 12. 16. 거금대교 개통 이후 거금도를 찾는 관광객 등으로 차량 통행이 급증하고 있으나, 최근 석산에서 석재를 운반하는 과적차량 운행이 빈번하여 교량의 훼손과 안전문제가 우려되고 있음.
-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으나 단속에 한계가 있으며, 단속반이 철수한 취약시간을 이용한 과적운행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어 과적차량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절실함.
- 따라서 과적차량 근절을 위한 고정식 검문소 운영 및 전자동 중차량 중량 정보시스템을 설치해 줄 것을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및 전라남도에 건의하고자 함.

☞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2013. 11. 19 군수제출, 11. 19 총무위원회 회부, 원안가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의 합리화를 위해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작성 고흥군의회 의결을 받기 위함



회기별 의안처리 현황

☞ **고흥군 의안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안**

(2013. 12. 12 군수제출, 12. 12 총무위원회 회부, 원안가결)

- 지방자치법(제66조의3)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자료를 제출토록 규정되었으며,
- 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의안의 비용 추계 및 재원조달방안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 **고흥군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 12. 12 군수제출, 12. 12 총무위원회 회부, 원안가결)

- 공무원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하여 공무원 부조리 행위 신고 포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신고기한 조정 및 신고자 등의 비밀보호강화 등을 통한 실효성 제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고흥군 장애인차별규정 일괄개정조례안**

(2013. 12. 12 군수제출, 12. 12 총무위원회 회부, 원안가결)

- 지난 2007년「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시행을 계기로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보장을 위해 법과 상충되는 관련 군 조례를 일괄개정하기 위함.

☞ **고흥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2013. 12. 12 군수제출, 12. 12 총무위원회 회부, 원안가결)

- 양성평등정책의 실현을 위한「성별영향분석평가법」의 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고흥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 12. 12 군수제출, 12. 12 총무위원회 회부, 원안가결)

- 임신 여성공무원의 보호강화 등 상위법령인「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부합하도록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관련법령의 인용조문을 일치시키는 등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고흥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3. 12. 12 군수제출, 12. 12 총무위원회 회부, 원안가결)

- 지방세 기본법에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이 신설됨에 따라 그동안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현행 징수 포상금 조례를 폐지하고 상위법 위임사항을 반영·보완하여 관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 **고흥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 12. 12 군수제출, 12. 12 총무위원회 회부, 원안가결)

- 「도로명주소법」에서 규정한 지번방식의 주소표기 방식이 2013년 12월 31일 종료되고 도로명주소만을 사용토록 함에 따라 지번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관련된 조례를 일괄 정비하기 위함.

**☑ 고흥군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013. 12. 12 군수제출, 12. 12 산업건설위원회 회부, 원안가결)

- 공공장소(도로, 공원)에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를 돌보지 않아 동물들이 배회하거나 종이상자 등에 담겨서 내버려진 동물들이 있어, 동물보호법에 정하는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함.

☑ 고흥군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

(2013. 12. 12 군수제출, 12. 12 산업건설위원회 회부, 원안가결)

-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함.

☑ 고흥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 12. 12 군수제출, 12. 12 산업건설위원회 회부, 원안가결)

- 주차공간이 부족한 도시계획지역 내 기존 주택건물의 대문이나 담장을 철거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여 주차난 해소에 기여코자 함.

☑ 고흥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13. 12. 12 군수제출, 12. 12 산업건설위원회 회부, 원안가결)

-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야간 및 방범 사각지대에 순찰과 우범지역에 청소년선도 등 지역방범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갖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 등을 재정하여 자율방범대원들의 사기진작에 기여코자 함.

☑ 고흥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13. 12. 12 군수제출, 12. 12 산업건설위원회 회부, 원안가결)

-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경제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물 사용량이 늘어나는 반면 한정된 물 자원과 기후변화로 인하여 앞으로 물 수급이 지역적인 불균형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기존 물 자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그동안 버려졌던 빗물, 오수 및 하·폐수처리를 생활용수 등 각종 용수로 재이용함으로써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함.

**제221회 임시회** (2013. 12. 18 ~ 12. 20)**☑ 고흥군 군정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 12. 12 군수제출, 12. 12 총무위원회 회부, 원안가결)

- 군정평가위원회 위원 중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우주항공분야, 대표성 있는 지역 상공인,



회기별 의안처리 현황

- 기관사회단체대표 등을 위촉함에 있어 지역 실정에 맞게 연임제한을 완화하고,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고자 함.

☑️ **고흥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 12. 12 군수제출, 12. 12 총무위원회 회부, 원안가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적용하여 기금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 저소득 주민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기준을 명확화하여 꿈나무 장학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 12. 12 군수제출, 12. 12 총무위원회 회부, 원안가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규정을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 **고흥군 해창만 수변공원 관리·운영 조례안**

(2013. 12. 12 군수제출, 12. 12 총무위원회 회부, 원안가결)

- 체류형 관광 유도를 위해 해창만 간척지에 조성한 야영기능 수변공원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 공원 시설의 관리·운영 기준 및 이용료 징수 관련 규정을 제정하여 이용객 편의와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고흥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13. 12. 12 군수제출, 12. 12 총무위원회 회부, 원안가결)

- 최근 먹거리 음식과 숙박 등이 관광 및 지역경제로 연계됨으로써 음식점과 숙박업 등의 위생업소가 지역경제 동력에 미치는 영향이 커져,
- 고흥군의 관광산업 발전 및 음식문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도모하기 위한 위생업소의 시설개선, 위생관리와 음식문화개선 등이 절실히 요구되기에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고흥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2013. 12. 12 군수제출, 12. 12 산업건설위원회 회부, 원안가결)

- 「자연재해대책법」제9조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지역의 재해 원인 조사, 분석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고흥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 12. 12 군수제출, 12. 12 산업건설위원회 회부, 원안가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7조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금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 고흥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2013. 12. 12 군수제출, 12. 12 산업건설위원회 회부, 원안가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에 따라 재난현장에서의 지휘체계 혼선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재난수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재난현장을 총괄지휘 및 조정하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고흥우주랜드 조성사업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 수립을 위한 군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2013. 12. 12 군수제출, 12. 12 산업건설위원회 회부, 원안가결)

- 고흥군내 국내 유일의 우주발사기지인 나로 우주센터가 입지함에 따라, 지역 연관자원 및 시설의 연계적 활용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 해안권 휴양관광문화벨트 구축, 영·호남지역 동서통합지대 조성 등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국토정책 추진에 따른 기반 마련 필요함에 따라,
- 국가우주산업 핵심인 나로우주센터 주변에 우주·항공을 테마로 한 관람·체험·교육·숙박이 어우러진 복합·문화공간 조성으로,
- 우주과학관련 문화·관광수요에 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남해안 선벨트권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2013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3. 12. 12 군수제출, 12. 1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원안가결)

- 2013년 제1회 추경예산 확정이후 보조금 정리·조정 및 법정·필수경비 반영으로 안정적인 재정운영 도모하고자 함.



제222회 임시회 (2014. 2. 12)

☑ 시산도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2014. 2. 05 군수제출, 2. 05 산업건설위원회 회부, 원안가결)

- 현재 시산도 마을인근에는 폐기물 처리시설이 없어 불법소각 및 매립 방치로 인한 해충 발생 등 청정지역 이미지 훼손
- 유동인구 증가로 인하여 생활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함으로써 이를 원활하게 처리하여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보건위생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특히 고흥군 도양읍에 있는 시산도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과 해양폐기물로 인한 폐기물 발생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매립장 및 쓰레기 처리시설이 시급한 실정임.



회기별 의안처리 현황

- 이에 시산도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특성을 조사하고 이를 경제적·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합리적인 처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폐기물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 방지 및 주민의 보건·위생 향상 도모를 위한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장을 설치 하고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에 의거하여 군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을 입안코자 함

☞ 도화 당오 지구단위계획에 관한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2014. 2. 05 군수제출, 2. 05 산업건설위원회 회부, 원안가결)

- 2010년 02월 05일(전라남도 고시 제2010-28호)에 고흥군 도화면 당오리 일원에 주택이 소규모로 연담화하여 건설되어 있으며, 개발여건이 양호하여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무분별한 도시 확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 주거지역의 정비, 건축기준의 제시, 도시기반시설의 설치 등으로 주민 편익시설이 증대되고 도시이미지 제고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결정 고시된 “당오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 농어촌지역의 거점공간인 면소재지에 교육, 문화, 복지시설 등의 불특정 다수 주민이 이용 가능한 적정수준의 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면소재지의 거점기능을 강화하고 기초 서비스 기능 향상에 도모하고
- 면소재지의 생활편익, 문화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확충함으로써 농어촌 주민들의 정주서비스 기능의 충족과 농어촌 지역의 중심거점 공간으로 육성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시행하는 도화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의 기초생활기반확충 전략사업 설치를 위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에 의거하여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입안코자 함

☞ 2013년도 군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계획 승인의 건

(2014. 2. 05 송우섭의원 등 5인 발의)

- 2013년도 군 발주 시설공사 및 민간자본보조사업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
- 사업추진의 타당성과 건설시공 여부 등을 살펴, 모범사례는 권장하고 문제점은 시정 개선하여 부실공사 추방과 군민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고흥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 2. 06 군수제출, 2. 06 총무위원회 회부, 원안가결)

- 행정 여건의 변화와 관련 법령 제·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현행화하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군정조정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고흥군 군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4. 2. 06 군수제출, 2. 06 총무위원회 회부, 원안가결)

-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으로 군세 감면 일부 규정이「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조례로 규정할 필요가 없는 부분은 삭제하고,
- 상위법인「지방세특례제한법」및「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사항과「식품산업진흥법」및「수산물품질관리법」의



- 개정과 폐지에 따라 조례 본문 중 타 법령의 인용 조문을 관련 법에 맞게 하고자하며,
- 동강농공단지의 명칭이 고흥청정식품단지로 변경됨에 따라 군세 감면의 명확한 근거를 두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 2013년도 군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



제224회 임시회 (2012. 4. 22 ~ 4. 23)

☞ 고흥군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 3. 14 군수제출, 3. 14 총무위원회 회부, 원안가결)

- 「영유아보육법」일부 개정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
-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운영의 합리화를 통한 공정성 제고 및 보육서비스 질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 고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 3. 14 군수제출, 3. 14 총무위원회 회부, 원안가결)

- 관계부처 합동으로 의결된 “국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방안” 시행에 따른 사회복지 인력의 순증분(4명)을 확충하고,
- 안전행정부의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계획에 의거 세무인력 순증분(2명)을 증원하며,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맞춰 정부의 지적인력 총액인건비 반영에 따른 지적업무 순증인력(1명)을 정원에 반영하고자 함.

☞ 고흥군 고흥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14. 3. 14 군수제출, 3. 14 총무위원회 회부, 원안가결)

- 고흥군 및 국가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미래 인재양성을 위해 우리군과 서울특별시가 협약하여 건립한 내발산동 공공기숙사(고흥학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효율적 지역인재 양성에 기여하고자 함.

☞ 고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 3. 14 군수제출, 3. 14 총무위원회 회부, 원안가결)

- 군민의 건전한 스포츠 여가 공간을 조성하고,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건립한 고흥 국민체육센터의 원활한 관리를 위한 사용기준을 마련코자 함.

☞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 촉구 결의안

(2014. 4. 03 군수제출, 4. 03 총무위원회 회부, 원안가결)



회기별 의안처리 현황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흡연자의 암 발생은 비흡연자보다 최대 6.5배 높고 진료비도 연간 1조7천억원이 추가 지출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실정임.
- 지난 1월 이사회를 개최하여 흡연피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안을 심의의결하여 담배제조 회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국민건강증진 및 보험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적극적 대응에 나섬.
- 따라서 고흥군의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제조 회사에 대한 소송 제기와 정부의 담배소송법의 입법추진을 촉구하고자 함.

☞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2014. 4. 03 군수제출, 4. 03 총무위원회 회부, 원안가결)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의 합리화를 위해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작성 고흥군의회 의결을 받기 위함.

☞ 고흥 우주해양리조트 특구계획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2014. 4. 03 군수제출, 4. 03 총무위원회 회부, 원안가결)

- 2009년 5월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된 고흥군 영남면 남열리 일원 고흥 우주해양리조트특구는 아름다운 남해안 경관을 배경으로 나로우주센터와 연계하여 동북아 우주항공 및 해양관광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차별화 된 고품격 리조트로 조성하고자 추진 중에 있으며
- 특구 지역내 우주발사전망대와 남열 해돋이 해수욕장은 고흥의 관광명소로 관광객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해수욕장내에 시설된 화장실 샤워장 등 관광객 편의시설이 노후되고 송림 숲에 산재되어 자연경관을 해치고 있어
- 관광편의시설과 오토캠핑장을 신설 정비하여 녹지의 경관을 보존하고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1조에 의거하여 특구의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 고흥군 외국도시와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

(2014. 4. 09 군수제출, 4. 09 총무위원회 회부, 원안가결)

- 21세기 글로벌 국제화 시대에 대비하여 선진 우수시책 도입 및 군정발전의 중장기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성장 가능성이 높은 해외 우수도시와 국제교류를 실시하고 있으나, 국제교류와 관련된 명문 규정이 없어 이를 명확화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여 내실 있는 업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아울러 「고흥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를 폐지하여, 서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내용은 조례를 따로 두지 않고, 그 주된 내용을 이 조례 안에 규정하고자 함.

☞ 고흥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 4. 09 군수제출, 4. 09 총무위원회 회부, 원안가결)

- 「지방세법」(2014. 1. 1.시행)의 개정에 따른 군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 및 세율을 상위법에 부합하게 적용하고, 과세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 고흥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 4. 03 군수제출, 4. 03 총무위원회 회부, 원안가결)



- 「지방세기본법」(2014. 1. 1.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군세의 적용을 상위법에 부합하게 하고, 지방세 징수업무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군세 기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 **고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 4. 09 군수제출, 4. 09 총무위원회 회부, 원안가결)

- 안전행정부의「민원수수료의 카드결제 도입 확대방안」추진에 따라 민원인의 납부편의를 위해 신용카드 등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

☑ **고흥군 규제신고고객 보호·서비스현장 운영 조례안**

(2014. 4. 09 군수제출, 4. 09 총무위원회 회부, 원안가결)

- 불합리한 기업 규제와 관행을 개선하려는 정부 및 전남도의 기업지원 정책에 따라 우리군 기업이 기업규제를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도록 기업규제를 신고한 기업·기업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도록 하는 ‘규제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현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우리군과 기업간의 소통과 신뢰로 수준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실현하고자 함.

☑ **고흥군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 4. 09 군수제출, 4. 09 산업건설위원회 회부, 원안가결)

- 농업·농촌 및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관련된 규정을 현행화 하고, 회계관계 공무원을 명확히 하여 고흥군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금산면 휴양관광빌리지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2014. 4. 09 군수제출, 4. 09 산업건설위원회 회부, 원안가결)

- 고흥군 관광수요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고흥군 읍·면 대부분 지역에 숙박시설이 열악하고 가족단위 펜션 및 야영(캠핑) 시설이 부족
- 특히 고흥군의 상징인 나로 우주센터, 우주과학관, 항공센터, 우주체험센터, 우주천문과학관 등 우수한 지역 자원이 많이 분포되어 있으나 숙박시설 부족으로 연계가 미약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약
- 따라서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숙박시설을 확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 주변 관광자원 활용, 자연과 몸이 하나 되고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힐링’으로써 역할을 제고하여 전라남도의 관광거점 시설로 해양테마 펜션단지 관광휴양 빌리지 조성사업을 추진코자 함

☑ **도덕면 신양리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2014. 4. 11 군수제출, 4. 11 산업건설위원회 회부, 원안가결)

- 가축분뇨 및 분뇨는 그 특성상 발생량에 비해 오염물질 부하량이 매우 큰 폐수로서 미처리되어 방류할 경우 하천의 수질악화는 물론 호소 등 정체수역에서 부영양화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토양, 지하수, 대기오염 등 환경전반에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며,



회기별 의안처리 현황

- 또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로 퇴비화, 바이오가스화 등 육상자원화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한 시점으로 이외 수요처 확보 및 에너지화, 자원화 처리방식 등 다각화 필요성 대두되고 있음
- 따라서, 하천 및 호소의 수질오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축분뇨 및 음식물류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환경기초시설 확충 등 정부의 노력과 각 가정, 축사 등의 발생원에서 오수분뇨 등 유기성 폐기물 발생량 저감하여 쾌적한 환경조성 통해 공중보건향상과 환경보전에 기여함으로써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보건 향상과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군관리계획 입안) 및 같은 법 제30조(군관리계획의 결정),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제159조 내지 161조(수질오염방지시설)에 의거 군관리계획을 결정(변경)코자 함.



제226회 제1차정례회 (2014. 7. 21 ~ 7. 31)

☐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4. 7. 11 군수제출, 6. 3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원안가결)

- 「지방자치법」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결산 감사위원의 감사와 「지방재정법」제53조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친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재무보고서를 고흥군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고자 함.

☐ 고흥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 7. 14 군수제출, 7. 21 의회운영위원회 회부, 원안가결)

- 지방자치법의 개정(2011. 7. 14.)으로 의장 직무대행 규정을 원용하여 상임위원장의 직무대행 규정을 상위 법령에 맞게 변경하고,
- 애매모호한 조문의 명확성을 바로 잡고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보완·정비하고자 함.



제227회 임시회 (2014. 9. 23 ~ 9. 24)

☐ 고흥군 군정공헌 포인트 관리 조례안

(2014. 9. 02 군수제출, 9. 02 총무위원회 회부, 원안가결)

- 군정 각 분야에서 보이지 않게 공헌해 오신 군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지속적인 군정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군정공헌 포인트제의 기본적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고흥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 9. 01 군수제출, 9. 01 총무위원회 회부, 원안가결)

- 감사원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등의 보조금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부적정에 대한 조치사항요구에 따라 보조금 이행담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련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고자 함.

☑ 2013년도 읍면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계획 승인의 건

(2014. 9. 12 총무섭의원 등 5인 발의)

- 2013년도에 읍면에서 발주 시행한 각종 시설공사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과 예산집행 상황 등 공사추진 전반에 걸쳐
- 서류검토와 현지확인 조사를 실시, 견실시공 여부 등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 개선하도록 함으로써 부실공사 예방과 군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2014. 9. 15 군수제출, 9. 15 총무위원회 회부, 원안가결)

- 팔영산 자연휴양림 진입부에 위치한 화장실, 주차장, 진입로, 물놀이터 등이 사유토지에 편입되어 휴양림 운영·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취득하고자 함

**제228회 임시회 (2014. 10. 14 ~ 10. 27)****☑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 2013년도 읍면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계획 변경 승인의 건**

(2014. 10. 07 총무섭의원 등 5인 발의)

- 2013년도에 읍면에서 발주 시행한 각종 시설공사의 추진사항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을 승인 의결하였으나,
- 제228회 임시회 집회일이 연장됨에 따라 2013년도 읍면 발주사업 행정 사무조사 일정을 변경하여 실시코자 함.

☑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2014. 10. 14 총무섭의원 등 5인 발의)

-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집행상황을 면밀히 파악, 예산안 심사 등에 필요한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며,
- 모범사례는 권장하고 잘못된 사항은 시정 요구함으로써, 군민의 복리 증진과 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뒷받침 하고자 함.

☑ 고흥군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안

(2014. 10. 10 군수제출, 10. 10 총무위원회 회부, 원안가결)



회기별 의안처리 현황

- 공직자의 부패신고를 의무화하여 신고 방법과 조사·처리 절차를 규정하고, 청렴해피콜 운영과 청렴도와 성과평가 연계 등 고흥군 공직자의 청렴도를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군정을 실현함은 물론 군정에 대한 군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 고흥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2014. 10. 10 군수제출, 10. 10 총무위원회 회부, 원안가결)

- 기초연금법('14. 5. 20. 제정)에 의거 만65세이상 노인에게 지급하고 있는 기초연금 지급과 별도로 장수수당 지급조례를 제정하여 기초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어 중복성·선심성 논란이 제기됨.
※ 만90세 이상 노인 : 월 30천원 지급
- 「기초연금법 시행령」제23조 제4항 '기초연금과 유사한 수당을 지급하는 지자체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기초연금 예산의 10%를 삭감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유사여부를 검토한 결과 현행지급 장수수당이 기초연금과 유사수당으로 판단되어 이를 폐지하고자 함.

☞ 고흥군 효행장려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2014. 10. 10 군수제출, 10. 10 총무위원회 회부, 원안가결)

- 기초연금법('14. 5. 20 제정)에 의거 만65세이상 노인에게 지급하고 있는 기초연금 지급과 별도로 효행장려금 지급조례를 제정하여 기초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어 중복성·선심성 논란이 제기됨. ※ 3세대 이상 동거가구 : 분기별 50천원 지급
- 「기초연금법 시행령」제23조 제4항에 '기초연금과 유사한 수당을 지급하는 지자체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기초연금 예산의 10%를 삭감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유사여부를 검토한 결과 현행지급 효행장려금이 기초연금과 유사수당으로 판단되어 이를 폐지하고자 함.

☞ 고흥군 교육경비 보조 및 교육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

(2014. 10. 10 군수제출, 10. 10 총무위원회 회부, 원안가결)

- 교육환경개선과 교육복지 활성화를 통해 미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보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 고흥군내 각급 학교(초·중·고)에 지원되는 교육예산의 체계적 관리와 집행의 투명성 배분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함.

☞ 고흥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14. 10. 10 군수제출, 10. 10 총무위원회 회부, 원안가결)

- 지역 주민의 지식정보 습득 및 이용격차를 해소하고, 평생교육의 장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작은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작은도서관 문화를 향상시키고자 함.

☞ 고흥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 10. 10 군수제출, 10. 10 총무위원회 회부, 원안가결)

- 평생학습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평생학습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군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 고흥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 10. 10 군수제출, 10. 10 산업건설위원회 회부, 원안가결)

- 음식물류 폐기물 의무감량사업장의 명칭변경,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의무감량사업장의 영업면적 변경, 업태특성을 고려한 예외규정을 적용하여 이를 반영하고자 함.

☑ 고흥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 10. 06 군수제출, 10. 14 산업건설위원회 회부, 원안가결)

- 2014년 10월 08일 고흥군수로부터 제출된 고흥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2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2014. 10. 27)에서 아래와 같이 의결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송함.

☑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의 건

(2014. 10. 14 군수제출, 10. 14 총무위원회 회부, 원안가결)

- 제6기(2015 ~ 2018년)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의회 의결을 거쳐 우리군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여 군민건강증진을 도모코자 함

☑ 2014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4. 10. 14 군수제출, 10. 1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수정가결)

- 2014년 당초예산 편성이후 변경된 ·도비 보조사업의 정리조정, 경상경비 및 행사·축제성 경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은 절감하여 재해예방 및 서민생활 안정사업 등에 재투자하여 건전 재정을 도모하고자 함.

**제229회 제2차 정례회 (2014. 11. 10 ~ 12. 18)****☑ 고흥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 11. 10 군수제출, 11. 10 총무위원회 회부, 원안가결)

- 인용 조례의 명칭 변경에 따라 관련된 규정을 현행화 하고,「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불필요한 표현을 정비하여 고흥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고흥군 지역발전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014. 11. 10 군수제출, 11. 10 총무위원회 회부, 원안가결)

-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발전과 지역 간의 연계 및 협력 증진을 통하여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자「고흥군 지역발전협의회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 시·군·구 발전협의회 설치의 법적근거인「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개정되어 근거가 소멸되었고,
- 새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방향이 지역행복생활권 구현을 핵심 전략으로 채택함에 따라 고흥군 지역발전협의회가 기능을 상실하여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회기별 의안처리 현황

☑️ **고흥군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4. 10. 31 군수제출, 11. 10 총무위원회 회부, 원안가결)

- 인용 조례의 제명 변경에 따라 관련된 규정을 현행화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불필요한 표현을 정비하여 고흥군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고흥군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설치 ·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 10. 31 군수제출, 11. 10 총무위원회 회부, 원안가결)

-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현행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불필요한 표현을 정비하여 고흥군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설치 · 운영 조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고흥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 10. 31 군수제출, 11. 10 총무위원회 회부, 원안가결)

- 규제개혁 업무담당 변경에 따라 관련 규정을 현행화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불필요한 표현을 정비하여 고흥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고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 10. 31 군수제출, 11. 10 총무위원회 회부, 원안가결)

-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는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관련 규정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 **고흥군 금고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 10. 31 군수제출, 11. 10 총무위원회 회부, 원안가결)

-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의 수를 2개로 제한하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 **고흥군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 10. 31 군수제출, 11. 10 산업건설위원회 회부, 원안가결)

- 고흥군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상표 사용허가 신청서류를 간소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 **고흥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014. 10. 31 군수제출, 11. 10 총무위원회 회부, 원안가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따라 우리 지역 청소년에 대한 상담 · 긴급구조 · 자활 · 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고흥군 체육진흥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 10. 31 군수제출, 11. 10 총무위원회 회부, 원안가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적용하여 기금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014. 11. 04 군수제출, 11. 10 총무위원회 회부, 원안가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의 합리화를 위해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작성 고흥군의회 의결을 받기 위함

☑ 고흥군 마복산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조례안

(2014. 11. 04 군수제출, 11. 10 산업건설위원회 회부, 원안가결)

- 목재에 대한 지식과 정보제공 및 체험을 통하여 목재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건립한 목재문화체험장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함.

☑ 고흥군 평생학습도시 조성 결의안

(2014. 11. 21 군수제출, 11. 21 총무위원회 회부, 원안가결)

- 교육부에서는 인생 100세 시대에 대비하여 지역 평생학습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지원
- 우리군에서도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2015년 평생학습도시 지정 신청을 준비하고 있음
- 참고하고자 함.

☑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

(2014. 11. 21 군수제출, 11. 21 총무위원회 회부, 수정가결)

-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한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확정으로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

☑ 2015년도 고흥군 기금운용 계획

(2014. 11. 21 군수제출, 11. 2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원안가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2015 회계연도 고흥군 각종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고흥군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고자 함

☑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



회기별 의안처리 현황



제230회 임시회 (2014. 12. 19 ~ 12. 23)

☑️ **고흥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4. 12. 01 송우섭 의원 등 11일 발의)

- 2014년도 고흥군 의정비 심의위원회 심의 경과에 의거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 고흥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제6조 1항(의정활동, 회기수당 지급기준)의 별표내용 지급기준 개정

☑️ **고흥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2014. 12. 01 송우섭 의원 등 11일 발의)

- 고흥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규칙의 개정으로 현행 고흥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과 상이하여 이를 일치하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 일부 조문 중 미비점을 보완하여 올바른 법규 체제를 갖추고자 동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 **고흥군 보조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4. 12. 13 군수제출, 12. 13 총무위원회 회부, 원안가결)

-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보조사업의 수행 및 관리, 성과평가 등의 기준이 법제화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 전부를 개정하여,
- 고흥군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보조사업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보조사업 공개 등 필요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지방보조금을 투명하고 계획적으로 운영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 **고흥군 주민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 12. 13 군수제출, 12. 13 총무위원회 회부, 원안가결)

- 현행 조례의 주민감사청구 연서 주민수를 하향 조정함으로써 군정에 대한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고흥군 노인공동생활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2014. 12. 13 군수제출, 12. 13 총무위원회 회부, 원안가결)

- 노인들의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독거노인들의 생활공간 확보와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인공동생활관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 규정 및 지원 근거 마련.

☑️ **고흥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 12. 13 군수제출, 12. 13 총무위원회 회부, 원안가결)

-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현행화하여 고흥군 공인 조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고흥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 12. 13 군수제출, 12. 13 총무위원회 회부, 원안가결)



- 「지방자치법」제104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군이 관장하는 사무 중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권한과 책임을 일차시키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 12. 13 군수제출, 12. 13 총무위원회 회부, 원안가결)

- 민선 4·5기 역점사업 마무리 총력과 일 중심의 조직 구축
- 행정환경의 변화를 최대한 반영함과 동시에 최소한의 조직개편으로 행정의 일관성 유지 및 조직의 안정성 확보
- 국가정책 추진에 따른 직제 신설 및 부서 간 유사 중복기능 업무조정으로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을 운영하고자 함.

☞ **고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 12. 13 군수제출, 12. 13 총무위원회 회부, 원안가결)

- 국가 정책 및 기준인건비제 시행에 따른 “규제개혁 담당” 순증 1명과 사회 재난 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해 “방재안전 인력” 1명을 확충하고,
- 민선6기 조직 개편에 따라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일 중심의 정원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 **고흥덤벙문화관 개관 준비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

(2014. 12. 13 군수제출, 12. 13 총무위원회 회부, 원안가결)

- 고흥 운대리 가마터는 분청사기 요지 25곳과 청자요지 5곳 등 모두300곳의 분청사기 가마터가 발견되면서 국내는 물론 국제 도자기 전문가들의 이목이 집중될 만큼 귀중한 역사·학술·예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곳이고,
- 또한 분청사기는 한국 미술품 중 가장 한국적인 특징을 지닌 민족 자기로서 한국인의 심성과 생활 감정을 그대로 반영한 한글 다음의 예술 창작품이며,
- 분청사기 가마터를 중심으로 한 문화(전시관) 및 특색 있는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묻혀 있는 고흥의 전통문화를 재조명함으로써 고흥의 역사 문화 가치 창출 및 위상을 제고하고자 하며,
- 이에 따라 분청 문화의 계승 보존은 물론 우주항공 체험객(연 20만명)의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국민 정서 함양 및 역사익식 고취를 위해 역사 문화공원 조성 등을 역사문화관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자 함.

☞ **고흥군 가족의 섬 우도 관리·운영 조례안**

(2014. 12. 13 군수제출, 12. 13 총무위원회 회부, 원안가결)

- 농어촌 소득증대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조성한 가족의 섬 우도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함.

☞ **고흥군 조선시대 흥양수군 관직계승에 관한 조례안**

(2014. 12. 13 군수제출, 12. 13 총무위원회 회부, 원안가결)

- 조선시대 수군 용사들의 희생정신 선양과 숭고한 넋을 기림
- 흥양수군 1관 4포 관직 계승을 통한 고흥의 임란 역사 지속 유지



회기별 의안처리 현황

- 호국문화유적의 온전한 후대 이양을 위한 영구적인 관리체계 구축

☒ **고흥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 12. 13 군수제출, 12. 13 총무위원회 회부, 원안가결)

- 2010. 9. 13 고흥군 건축조례 개정 이후 건축법(6차 개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14차 개정)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 건축법에서 건축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운영상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 보완 또는 신설하여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조화로운 건축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군민의 편의를 향상시켜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구현하고자 함.

☒ **고흥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 12. 13 군수제출, 12. 13 총무위원회 회부, 원안가결)

- 잘못 적용한 법령 인용 조항을 현행 법령 조항대로 바로잡고 현행 조례의 조문 내용 중 미비한 사항을 일부 보완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조례의 일부를 개선·정비하고자 함.

☒ **고흥군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 12. 13 군수제출, 12. 13 총무위원회 회부, 원안가결)

-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군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 **고흥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 12. 13 군수제출, 12. 13 산업건설위원회 회부, 원안가결)

-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에 검토한 결과 사실조사를 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성 있는 기관 또는 단체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여 개정대상으로 선정
- 관련 단체를 공정하게 선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전문성 있는 기관 및 단체간 경쟁촉진 및 사실조사의 객관성 제고

☒ **고흥군 유자골 고흥한우 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

(2014. 12. 13 군수제출, 12. 13 산업건설위원회 회부, 원안가결)

- 유자골 고흥한우 브랜드의 차별화와 소비자 인지도 및 품질의 고급화를 도모하고자 함.

☒ **고흥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 12. 13 군수제출, 12. 13 산업건설위원회 회부, 원안가결)

- 「제조제없는 고흥군 친환경농업 육성」조례로 명칭을 개정하여 제조제 사용에 따른 농업환경 변화에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제조제를 사용하지 않은 농가나 단체에 인센티브를 부여 지원을 늘리고 농약안전사용기준 준수 등으로 농업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기반 조성에 도모하고자 함.

**☑ 고흥군 거금 해양낚시공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014. 12. 13 군수제출, 12. 13 산업건설위원회 회부, 원안가결)

- 해양낚시공원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로 해양관광산업 육성
- 민간위탁 운영으로 어촌 소득증대와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 고흥군 어항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 12. 13 군수제출, 12. 13 산업건설위원회 회부, 원안가결)

-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현행화하여 고흥군 어항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고흥군 양식장형망선 정수 및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4. 12. 13 군수제출, 12. 13 산업건설위원회 회부, 원안가결)

-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현행화하여 고흥군 양식장형망선 정수 및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고흥군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14. 12. 13 군수제출, 12. 13 산업건설위원회 회부, 원안가결)

-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에 100원 택시를 운행하여 해당마을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교통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고흥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 12. 13 군수제출, 12. 13 산업건설위원회 회부, 원안가결)

- 상위 법령인「도로법」및「도로법 시행령」인용 조문 변경에 따라 관련된 규정을 현행화하고자 함.

☑○ 고흥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4. 12. 13 군수제출, 12. 13 산업건설위원회 회부, 원안가결)

- 상위 법령인「도로법」인용 조문 변경에 따라 관련된 규정을 현행화하고자 함.

☑ 2014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4. 12. 15 군수제출, 12. 1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수정가결)

- 2014년 제1회 추경예산 확정이후 보조금 정리·조정 및 법정·필수경비 반영으로 안정적인 재정운영 도모하고자 함.

☑ 2014년도 제2회 고흥군 기금운용 계획변경

(2014. 12. 13 군수제출, 12. 13 산업건설위원회 회부, 원안가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제2회 고흥군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고흥군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고자 함

군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열린의회

고흥군의회



군의회
7.2



군정질문 및 답변

[제229회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 및 답변



정 순 열 의원

☑️ 고흥 도양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은 ?

Q1 고흥 도양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은 ?

군민 소득 창출 및 인구유입에 대해서 깊은 사색과 고민중에 산업단지조성이 우리군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여겨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2008년말 민간투자자인 부산저축은행에서 투자하여 SPC 설립하고 제반 인허가 등을 진행하였으나 증자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 부딪혔고, 2012년 7월 해양플랜트 전용산단 개발에 따른 새로운 시행 기업마저 좋지 않은 경기 여파와 지자체의 채무보증에 대한 제약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민들께서 변화와 발전을 바라는 뜻을 모아 주셔서 2012년 실시계획 승인 신청이후 1년여간 관계부처 협의를 모두 완료하고, 2013년 7월 산업단지 승인 고시로 모든 행정 절차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해결하고자 하는 열정과 의지, 한결음 나아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지금 이 단계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민간 투자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경기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계획했던 일정보다 지연될 뿐이지 사업 자체가 보류된 것은 아닙니다.

조선업에 국한하지 않고 임해산단과 우리군의 특성을 효과적으로 활용 가능한 전 업종에 걸쳐서 유치 및 투자자 발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전체 개발계획을 두 단계로 나눠서 먼저 산업단지를 1단계로 개발한 후, 2단계로 배후단지를 개발하여 보다 용이하게 투자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부터 산업단지 진입도로 및 공업용수 등 기반시설 공급 사업에 국비 290억원과 248억원을 각각 확정하여 2014년 13억원을 확보하였고, 내년도에는 94억원을 확보하여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의 전남지역 투자가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군은 실수요 기업과 투자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보다 진전된 관계로 이른 시일내에 사업 시행사 지정 등 가시적인 성과가 예상됩니다.

그동안 다소간의 불편을 인내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도양일반산업단지를 성공적으로 만들어 고흥발전의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저의 온 열정을 다하겠습니다.



송 영 현 의원

- ☑ **한·중국, 한·영연방 3개국(호주, 캐나다, 뉴질랜드)자유무역협정(FTA) 타결에 따른 우리군 농수축산업 중 협상 타결된 주요 품목에 대한 경쟁 우위 방법과 타결 이후 우리군 농수축산업인들의 생계대책은?**
- ☑ **한·중국, 한·영연방 3개국(호주, 캐나다, 뉴질랜드)자유무역협정(FTA) 타결에 따른 농업인 월급제 도입 계획은 없는가?**
- ☑ **축종별 경쟁력 육성사업 중 2014년도 낙농기술지도 민간자본보조금 21백만원(전액 군비) 지원했는데, 2015년부터는 지원 중단한 사유 및 대책은?**
- ☑ **지적재산권 확보를 위한 지리적표시제 등록확대 및 사후관리 운영방안은?**

Q1 한·중국, 한·영연방 3개국(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에 따른 우리군 농수축산업 중 협상 타결된 주요 품목에 대한 경쟁 우위 방법과 타결이후 우리군 농수축산업인들의 생계대책은?

먼저, 한중 FTA는 발효되더라고 주요민감품목은 양국이 양허제외를 하였기 때문에 당장 피해가 나타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중국은 가장 위협적이고 거대한 시장이므로 꾸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제는 영연방 3개국인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인데, 한-호주는 금년 4월 8일 정식 서명, 한캐나다는 6월12일 가서명, 한뉴질랜드는 11월 15일 타결되어 우리나라가 체결한 14번째 FTA로 우리나라는 총 52개국과 FTA를 체결하였습니다.

한국 농촌경제연구원의 농축산분야 영향 분석을 보면 한-호주와, 한-캐나다 FTA가 내년 발효시 2조 1천 329억원의 농축산물 생산액이 감소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특히 축산업의 피해가 큰데 1조7천600억 규모이며 재배농산물이 3,700억 규모의 생산액이 감소된다고 합니다. 축산물은 쇠고기, 돼지고기 등의 수입증가로 직간접 피해와 농산물은 보리, 콩, 감자의 수입증가로 인한 작목전환에 따른 간접피해로 마늘, 양파가 직격탄을 맞을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에따라 축산분야 우리군 대책은 정부 대책에 따른 기존사업 확대 및 축사시설현대화와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등으로 대책과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두당 지급액 : 직불제(송아지) 47,000원, 폐업(암소) 886,000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과 녹색축산 육성기금지원 등으로 축사 환경개선과 축종별 경쟁력 제고에 힘쓰고 있으며, 앞으로 조사료 저장시설, 소포장 제조시설 등을 갖춘 조사료 유통센터 지원사업을 통해 조사료 재배면적을 확대하여 경종농가 2모작 소득은 물론 안정적인 조사료 공급으로 사료비 절감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 고흥한우명품화사업 추진으로 고흥한우를 생산에서 가공, 유통, 마케팅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유자골 고흥한우의 브랜드 가치 향상을 통한 축산농가 소득향상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을 보면 그동안 쌀은 정부가 수입 물량을 제한하여 국내 시장을 보호해 왔으나, 내년부터는 관세(513%)를 통해 쌀시장을 보호할 계획입니다.



군정질문 및 답변

☑ 체육인의 각종 유품, 소품 및 소장 자료 등을 수집 보관하고 있는가?

☑ 금후 재조명 사업(세미나, 학술대회 등) 추진방안은?

군에서는 관세화 이후에도 쌀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도록 쌀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농가 불안감 해소를 위해 다음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벼 재배면적과 쌀 소비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쌀 산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안정적 생산기반을 유지하고 친환경유기농업을 확대할 계획이며 또한 벼 뿐만아니라 과수, 채소, 임산물 등 품목을 확대하고 소비자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품질 좋은 유기농산물을 확대 생산 계획입니다.

둘째, 쌀값 하락과 농가소득 감소에 대비 쌀소득등보전직불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쌀 고정직불금 단가를 ha당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발작물 및 논 이모작 동계 작물은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하고 대상품목도 지속적으로 확대 계획입니다.

셋째, 수입쌀과의 경쟁에 대비하여 군에서 생산된 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쌀전업농과 50ha 이상 들녘경영체육성 등 규모화와 조직화를 추진하고, 벼 2기작 재배 면적확대 등 생산비 절감과 고품질 쌀 생산 판매에 주력하겠습니다.

넷째, 기계화가 어려운 발작물의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 다목적 농기계 지원을 확대하고 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을 해결하고 고품질 쌀 생산을 선점하기 위해 4無농법실천(무농약, 무비료, 무제초, 무경운) 자연재배 면적을 확대 조성하겠습니다.(20ha ⇔ 30ha)

다섯번째, 유통분야에서 국산쌀과 수입쌀을 섞어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여 쌀의 부정유통을 철저히 방지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높여 가겠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고 합니다. 세계 농업 강국과의 FTA 체결은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이며 우리군은 농업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경쟁력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양념채소 분야는 원예브랜드사업의 금년말 준공으로 고흥 마늘종합처리시설이 내년부터 본격 운영될 것입니다. 또한, 마늘, 양파는 가격안정기금운용을 통해 안정적인 수급관리 및 농가 소득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생산비 절감으로 경쟁력을 높여나가기 위해 기계화 확대와 우량 종구를 지속 공급하는 등 비용절감 및 품질고급화를 도모하겠습니다.

과수분야는 우리군 재배 면적이 많은 참다래가 뉴질랜드와의 협상에서 우리나라에 많은 양보를 요구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우리군에서는 기존의 그린키위보다 붉은 과육의 레드키위와

전남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골드키위인 해금 등으로 품목 갱신을 유도하는 등 경쟁력을 키워나가겠습니다.

특히, 농가소득이 지속적으로 향상되어 생활형편이 나아지도록 민선5기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농림수산물식품산업비전5000프로젝트를 보다 더 치밀하고 강도높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Q2 한·중국, 한·영연방 3개국(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에 따른 농업인 월급제 도입계획은 없는가?

농업인 월급제는 벼 재배 농가의 농업소득이 가을 수확기에 편중되어 영농준비와 자녀학비, 생활비 등 연초에 받는 경제적 부담이 가계부채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농업인이 농협자체 수매로 출하할 벼의 예상 소득을 월별로 나누어 미리 지급하여 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계획적 경영을 지원하고 수매가 끝난 12월에 농가가 지급 받은 금액을 농협을 통해 농가에서 군 지정계좌로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2012년 화성시에서 도입 시행하였으며, 벼를 2ha 이상 재배하며 RPC와 계약재배한 농가에게 10개월간 농가당 월 1백만원씩 연 1천만원을 36농가에게 지급한 것이 처음이며, 그뒤에 순천시에서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총지급액은 상한 800만원, 하한 금액은 400만원으로 정하고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30농가에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 적용단가 : 5만원 / 40kg 포대의 60%
- 상한 800만원(8개월)은 267개 이상 출하예상농가
- 하한 400만원(8개월)은 134개 이상 출하예상농가

우리군의 경우 시행한다면 농가당 평균 벼 재배면적이 0.8ha이지만, 2ha 이상 재배 농가는 1,372농가이며 전체농가의 16% 정도가 지원 대상이며 순천시를 모델로 할 경우 연간 110억원의 재원이 필요하여 군 재정 형편상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농가는 소득의 안정적 배분으로 계획적인 생활과 월급을 받는다는 안정감을 주어 농업인의 사기 진작 등 영농의욕을 고취시킬 것으로 보이나, 일정 소득이 보장된 규모화된 농가만이 지원을 받게 되면 결국 소규모 농가는 상대적으로 소외 될 수 있으며 다같이 잘사는 고향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는 군 시책에도 반한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여건이 허락한다면 우리군도 타 지자체의 시행 사례를 분석하고 농업관련단체, 농협, 농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예산 형편에 따라 시행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Q3 축종별 경쟁력 육성사업 중 2014년도 낙농기술지도 민간자본보조금 21백만원(전액 군비) 지원했는데, 2015년부터는 지원 중단한 사유 및 대책은?

우리군 낙농업 규모는 작년 12월말 현재 31농가 1,719두('14년 11월 현재 1,678두)로써 한우 사육규모의 5% 수준입니다.

○ 지금까지는 낙농업 종사자가 매일 우유를 짜야 하는 형편으로 휴무일이 없어 어려움이 많아 낙농가의 복지향상을 위해 군비 2천 1백만원을 지원하여 낙농기술 전문요원 2명을 채용 활용토록 함으로써 농장 기술 관리를 대행토록 해 왔습니다.

- 낙농기술지도 인건비 : 175만원 × 2명 × 12개월 × 50/100 = 21백만원

또한 전남도에서는 젓소 사육 17개 시군 중 우리군을 제외한 담양, 보성, 화순, 함평, 영광 5개 군만 본



군정질문 및 답변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축산농가에 어려움은 많지만 본 사업이 2008년부터 지원되어 이제 정착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판단됨에 따라 이제는 낙농가 협회에서 자체 자금으로 착유 도우미인 헬퍼를 고용하여 파출지원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고 보고 2015은 사업을 폐지하였습니다.

앞으로 낙농가 협회가 자율적으로 낙농 기술지도 사업을 추진토록 지도하고 자체 운영에 어려움이 심화될 경우 타시군의 사례를 분석하여 군 예산여건에 따라 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

Q4 지적재산권 확보를 위한 지리적표시제 등록확대 및 사후관리 운영방안은?

질의하신 지리적표시제 등록 확대 건에 대해서는 현재 농산물은 고흥 유자를 비롯한 3개 품목, 수산물인 미역 등 2개 품목이 지리적표시제로 등록되었으며, 지리적표시 단체표장도 특허청에 유자 등 5개 품목이 등록되어 있는 상태로 향후 농산물은 고흥마늘, 임산물은 고흥취나물, 수산물은 김, 전복 등이 등록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리적표시 등록 품목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입니다. 지리적표시제 등록은 우리지역의 지적재산권 보호 뿐만아니라, 고흥 농수축산물의 이미지 브랜드인 만큼 그 가치는 실로 크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브랜드 가치를 더 향상 시키기 위해 품목별 관리 주체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참여 농가들의 인식 전환, 품목별 브랜드 활용 관리를 위한 수시점검 실시, 그리고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 확대로 고흥농수산물의 우수성을 알려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5 체육인의 각종 유품,, 소품 및 소장자료 등을 수집 보관하고 있는가?

고인이 되신 김일 선수에 대해서 금산면 김일기념체육관에 현역시절 시합 영상물 1편(15분)과 최근에 제자 이왕표 선수가 보관하고 있는 링을 기증받아서 내년에 체육관 내에 설치할 계획임. 그 외에 체육인의 유품, 소품 등은 보관하지 않고 있음.

Q6 금후 재조명 사업(세미나, 학술대회 등) 추진방안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고흥을 빛낸 체육인 하면, 앞서 말씀드린 김일 선수와 현존해 있는 유재두·백인천(복싱),유중탁·신진식(배구), 박지성·김태영(축구), 김재룡(마라톤) 선수들이 있음.

「고흥군 출신 체육인의 재조명 사업」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흥의 역사·인물 재조명 사업」에 포함되도록 문화관광과와 협의하겠습니다.

현존해 있는 체육인에 대해서는 그분들을 직접 만나 성장기나 일대기를 정리해 후세에 역사기록으로 남기고 기증품을 수집해 현 체육시설에 전시공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음.



김 재 열 의원

☑ 고흥군 유통(주)의 설립 취지 및 고흥군 유통의 최대주주로서 고흥군의 권한은?

Q1 고흥군 유통(주)의 설립 취지 및 고흥군 유통의 최대주주로서 고흥군의 권한은?

먼저, 고흥군유통(주)의 설립취지는 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해 농수축산업 소득 향상에 주력하면서, 반농·반어업 경영이 보편화된 지역적 특성을 감안 고흥군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유통·가공·판매를 함으로써 지역특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생산자의 이익증대를 도모 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유통의 최대주주로서 고흥군의 권한에 대해 말씀 드리면, 고흥군유통(주)은 상법상 주식회사로서 실질적인 경영은 이사 및 감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대주주 입장인 우리군에서도 상급 지침에 의거 직접적인 경영 관여는 어렵지만 “농업회사법인 고흥군유통주식회사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경영 상황을 수시로 체크하고 예산지원과 경영개선 등을 위한 지도·조언 또는 권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권한행사를 제대로 하여 금번 재고자산 손실사고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 실천하는 의미로 현재 담당직원이 고흥군유통(주)을 거의 매일 현지 방문하여 경영실태 및 운영 상황을 체크하고 있으며, 지난 고흥군유통(주) 제8차 이사회(10. 21)시에는 고흥군 유통(주) 경영안정 및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권고(안)를 제시하여 이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당부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도 고흥군유통(주)이 당초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경영에 내실을 기하여 고흥군 통합마케팅조직으로서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군정질문 및 답변



정 동 우 의원

- ☑ 지방공무원 정원규정에 맞는 인사 개선 방안은?
- ☑ 민선4기부터 현재까지 MOU 체결 건수 및 투자유치 실적?
- ☑ 고흥 우주해양리조트특구조성사업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은?

Q1 지방공무원 정원규정에 맞는 인사 개선 방안은?

말씀하신 부분은, 인사부서에서도 고심하고 있는 사항으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만, 직급 체계 변동과 결원, 직렬 불부합 등으로 근본적 개선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먼저, 11월말 기준 우리 군 정원은 767명으로, 결원이 27명이며, 직렬은 38개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각 부서별로 정원과 직렬이 정해져 있으나, 실제로는 명퇴 및 정년, 전출, 출산육아 또는 질병 휴직 등으로 인해 부서당 1~2명씩, 전체는 매년 30여명 이상의 결원이 발생하는 상황으로, 규정대로 인사를 운영 하기란 사실상 어렵습니다.

또, 직렬의 경우도, 행정 여건의 변화 및 조직개편 등으로 당초 직렬과는 맞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특정부서에 타 직렬이 배치되는 상황도 종종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직무분석을 통해 부서별 정원을 현실에 맞게 조정한 바 있으며, 하나의 직위에 여러 직렬이 배치 가능하도록 '복수직렬 제도(한 직위에 4개의 직렬 지정)'를 최대한 활용하는 등 인력 운영에 탄력을 기함과 동시에, 직렬 불부합을 억제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6급 무보직(42명)에 대한 '보직평가제'를 비롯해, 일 잘하는 공무원의 이력 관리를 통한 '성과 마일리지 제도' 등도 적극 검토하는 등 투명하고 공감 받는 인사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Q2 민선4기부터 현재까지 MOU 체결건수 및 투자유치 실적?

먼저 민선4기 이후 투자정책과에서 추진한 MOU체결 및 투자유치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청정한 농수산물이 생산되는 지역으로서 이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여 왔으며, 투자유치에 불리한 지리적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88건의 MOU를 체결하여 43건을 투자실현 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45개 업체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투자실현을 이끌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동강 제2농공단지를 조성하고 수출물류센터를

건립하게 되면 기 협약한 바 있는 30여개 식품업체가 입주 할 예정으로 있어 추가 투자유치의 실적을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지역에 투자한 기업들이 안착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고용창출 · 지역 농수산물 판로 확보 등 지역경제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Q3 고흥 우주해양리조트특구조성사업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은?

영남면 남열리 일원에 추진중인 고흥우주해양리조트특구 조성사업은 숙박시설, 휴양문화시설 등 면적 115만8천㎡, 사업비 2,885억원 규모의 민간투자 사업으로, 지난 2009년 5월 특구로 지정되어 토지매수 후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경기침체 및 금융위기로 시행사의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가중되어 불가피하게 지연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외부적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특구내 공공부분인 우주발사전망대를 준공하였고, 개발촉진지구 지정을 통해 도로 및 상수도 기반시설 사업비 67억원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는 등, 공공사업부문 선 개발로 인한 투자여건 개선을 이루어 놓음으로써 현재 실행능력이 있는 투자의향 기업과 실무협의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계획변경과 토지매수를 시작으로 본격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천혜의 아름다운 해양자원을 바탕으로 우리군만의 차별화된 고품격 리조트를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





군정질문 및 답변



 최 성 자 의원

- ☑ 친환경 농산물 식자재 지원사업 관련하여 업체에서 공급하는 친환경 농산물 안전성 확보 방안은?
- ☑ 친환경 농산물 식자재 지원사업 관련하여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공급 가격을 낮추는 방안?
- ☑ 분청문화특구조성사업중 특구지정 등 현재까지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은?
- ☑ 분청문화특구조성사업중 우리 군 특성에 맞는 규제완화를 통해 특색 있는 문화 예술 체험 공간 조성을 위한 차별화된 특구 조성 사업 계획은?
- ☑ 팔영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 관련 테라피 완공 시 운영전략은?

Q1 친환경 농산물 식자재 지원사업 관련하여 업체에서 공급하는 친환경 농산물 안전성 확보 방안은?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연중 계획을 세워 관내에서 유통되는 친환경 농산물 샘플을 확보하여 검사 중에 있으며, 우리군에서도 2015년도 예산에 도비가 지원(30%)되어 12,575천원의 검사비와 5,000천원의 간이검사기 구입비용을 계상해 놓은 상태로 자체적으로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안정성 확보에 힘쓸 계획입니다. 내년에 관련예산이 반영되어 원활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2 친환경 농산물 식자재 지원사업 관련하여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공급가격을 낮추는 방안?

친환경농산물 공급범위는 전라남도산으로 한정되어 운영되고 도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일부품목만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시군별 가격편차를 어느정도 맞추기 위해서 매월 군, 교육청, 공급주체, 영양사대표, 계약재배 농가 등이 참여하여 인근 3개시군 이상의 시장가격을 사전 조사한 후에 공급가격 결정협의회를 거쳐 다음달 공급가격을 결정하고 있으며, 전라남도에서도 시군별로 취합된 자료를 토대로 가격편차가 심하면 조정을 권고하는 등 이중 장치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더라도 시군별로 약간의 가격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공급한다면 타시군 농산물에 비해 물류비용 등에서 경쟁력이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년도 학교급식 공급업체가 선정되면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농산물 품질유지와 지속 공급가능성이 있는 관내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 등을 대상으로 계약재배를 확대하여 학교급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Q3 분청문화특구조성사업중 특구지정 등 현재까지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은?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지금까지 중앙정부 주도의 지역개발 정책 및 전국을 대상으로 한 일률적인 규제 개혁 추진방식으로는 각 지자체의 수많은 개별적인 수요를 반영하기가 곤란하다는 인식하에,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지역 특화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도입되었습니다.

고흥 분청 문화특구는 두원면 운대리 141-1번지 일원에 420억원을

☑ 팔영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 완료 후 유치가능 관광객 수 및 수입·지출 예상 내역?

☑ 팔영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 관련하여 편백나무가 민간기업 소유인데 벌채허가 신청할 경우 그 대책은?

투입, 2012년 1월부터 2016년말까지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는 덩명분청문화관 및 분청공원, 청소년수련시설과 도예마을 조성 등 하드웨어 사업과 연계하여 운대리 일대 221,024㎡를 지역특화발전 특구로 지정하여 고흥군이 가지고 있는 관광자원과 접목하여 새로운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고, 군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문화콘텐츠를 개발하여 지역의 이미지 및 주민 자긍심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현재 지역특화발전 특구 지정을 위해 2013. 12. 30일 용역사업을 발주하여 특구 면적 및 위치, 대외적 표시 방법, 특구 지정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의 수행과,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 계획 및 규제특례 사항 결정을 위해, 세부적인 특화사업의 규제 완화 사항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특화사업 및 규제특례 사항에 대한 조율이 완료되어 지역특화발전 특구계획에 대한 주요 내용을 공고하고, 주민공청회 및 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최종적으로 2015. 3월중 중소기업청에 특구 지정을 신청, 2016. 6월말까지 분청문화특구 지정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Q4 분청문화특구조성사업중 우리 군 특성에 맞는 규제완화를 통해 특색 있는 문화예술 체험 공간 조성을 위한 차별화된 특구 조성 사업 계획은?

두원면 운대리에 있는 분청사기 요지는 청자 5기와 분청사기 25기의 국내 최대 규모로서 분청사기의 출현에서 쇠퇴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 사적 제519호로 지정되는 등 도예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이러한 분청사기의 문화·역사·학술·예술적 가치가 풍부한 운대리 일대를 특구로 지정하여 고흥의 문화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 그동안 문화적으로 소외되었던 지역에 풍부한 문화 예술 체험 공간 및 문화 콘텐츠를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우리군이 분청 문화도시라는 새로운 이미지 구축을 위해 고흥분청 문화관 및 공원과 더불어 고흥군의 과거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분청 문화특구 조성을 위하여, ‘고흥분청문화도시 이미지 구축’, ‘과거·현재·미래 문화 공감’, ‘고흥 분청문화 산업 활성화’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세부 특화사업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분청문화 브랜드사업, 환경디자인 개선사업, 가마터 발굴 홍보 및 이미지 제고사업, 분청문화 관광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분청문화 콘텐츠 발굴 구축, 청소년 수련 프로그램, 고흥분청문화 축제 등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군정질문 및 답변

이러한 특화사업들의 실현을 위하여 지역 맞춤형 규제특례로 ‘도로법에 관한 규제 특례’, ‘도로교통법에 관한 규제 특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규제 특례’, ‘특허법에 관한 규제 특례’를 통해 타 지역과 차별화된 규제 완화를 통하여 지역의 특성화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역특구 지정을 통해 경제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지역의 다양한 문화관광 자원과 접목하여 새로운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고, 문화적 이미지 제고를 통해 고흥군을 국내외에 관심을 이끌어내어, 군민들에게 긍지를 불어넣고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Q5 팔영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 관련 테라피 완공 시 운영전략은?

테라피센터는 이 사업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생소할 수도 있는 이 테라피센터는 치유의 숲 방문객이 치유, 명상, 체험, 교육 등 자연 치유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는 일종의 건강증진 센터에 해당됩니다. 연면적 3,484㎡의 2층 목구조이며 유료로 운영하여 치유의 숲 주 수입원으로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적자 발생에 대해서는 계획 단계에서부터 관리와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패시브하우스라는 겁니다. 패시브하우스란 첨단 단열공법을 이용하여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하는 건축물을 의미하는데 테라피센터를 바로 이 패시브하우스로 지을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물, 지하수 및 지하의 열 등의 온도 차를 냉난방에 활용하는 지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됩니다. 초기 투자비는 화석 연료시스템의 두 배 가량 되지만 운영 시 50% 정도의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겨울철 실내의 열 보존과 여름철 외부의 열 차단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3중 유리창 설치, 중부지방 이상 지역에서 사용하는 가동급 단열재로 시공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패시브하우스를 적용하면 일반 건축물보다 최대 90% 열 손실을 막을 수가 있어 유지관리비를 줄이는 데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건물 밖에 별도의 태양광을 설치하여 그 수입으로 관리비에 충당할 계획입니다.

팔영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 완료 후 유치가능 관광객 수 및 수입·지출 예상내역?

연간 치유의 숲 이용객은 135,000여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유료로 이용될 테라피센터 이용객은 이 가운데 20%인 27,000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27,000명 가운데 사업 개시년도에는 그중에 20%가 2차년도 40% 등 점차 증가하여 5차년도가 돼서야 100%인 27,000여 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목표치를 정하였습니다.

주요 수입은 테라피센터 이용과 매점 및 유기농 체험실 운영, 태양광 발전 등을 통하여 충당할 것입니다. 소요비용은 인건비, 일반관리비, 통신, 소모품, 광열비 등 기타 비용과 숲길 유지 및 관리비용 등이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전제로 경제성 분석 결과 운영 3년차부터 수익이 발생하며 누적 손익으로는 5년 차부터 흑자 전환 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Q6 팔영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 관련하여 편백나무가 민간기업 소유인데 벌채허가 신청할 경우 그 대책은?

현행 법령상 벌기령 미도래, 국립공원구역에서의 벌채 허가 등으로 벌채 허가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씨를 아예 없애는 방안으로 466ha 등 편백나무 전체를 우리 군에서 매입하려고 합니다. 현재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하여 입목 조사를 진행 중이며 내년에 감정 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매입할 예정입니다.



안 정 민 의원

☑ 보조사업지원대상자가 실과소간 업무 협의가 루어지지 않아 중복지원 대상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4년 이내에 다시 보조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특혜성과 공정성이 결여되고 있어 다수의 군민이 혜택을 누려 군민 소득 증대에 기여한합리적인 각종 보조사업이 추진 될 수 있는 방안은?

Q1 보조사업지원대상자가 실과소간 업무 협의가 루어지지 않아 중복지원 대상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4년 이내에 다시 보조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특혜성과 공정성이 결여되고 있어 다수의 군민이 혜택을 누려 군민 소득 증대에 기여한합리적인 각종 보조사업이 추진 될 수 있는 방안은?

농업보조사업은 열악한 농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업시설물과 농자재 등을 지원하는 보조사업으로

최대한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사업신청 및 자격요건 등을 확인하여 선정 지원하고 있으나, 일부 중앙·도 공모사업과 연말 사업 포기자가 연간 40여명 이상 발생하기 때문에 대상자 변경을 위해 추가 선정시에는 불가피하게 중복지원이 되더라도 사업 신청 자격에 적합하면 중복 지원이라 하더라도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는 농업보조사업의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2012년도부터 농림사업이력관리전산시스템에 2002년 이후 모든 농업보조사업의 지원 사항을 입력·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제유통과, 환경산림과, 농업축산과, 농업기술센터)

또한, 농업보조사업자의 중복지원 방지 및 선정 절차 투명성을 위해 사업비 3천만원 이상 신청시 최근 5년간 1천만원 이상 지원받은 사실 등 보조사업 이력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 대상자(개인정보 비공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시설하우스 표준계약서 작성으로 부실시공을 사전 방지하고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전 집합교육을 실시하는 등 대상자의 공정한 선정과 사업장의 철저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4년 개정되어 더욱 강화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우리군 조례에 의거 보조사업 신청 및 대상자 선정부터 사후관리까지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보조금 부당 사용시 보조금 회수 및 지원을 제한하는 등 건전하고 효율성있는 보조사업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인 시스템이 정비되었기 때문에 2015년도 부터는 보다 더 철저하게 지역 농업과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보조사업을 운영해 나갈수 있게 되었습니다.



군정질문 및 답변



 임 선 신 의원

- ☑ 풍양 양계장 개발행위 허가 신청에 따른 양계장 신축 복합민원처리 현황은?
- ☑ 풍양 양계장 신축 관련 (복합민원) 해당관련부서 협의 및 조치사항은?
- ☑ 풍양 양계장 환경영향 평가 기관 및 평가 결과 반영은?
- ☑ 풍양 양계장 신축시 시공사 위법사례 조치사항은(총괄)?
- ☑ 풍양 양계장 민원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 ☑ 풍양 양계장 준공처리 및 향후 조치 사항은?

Q1 풍양 양계장 개발행위 허가 신청에 따른 양계장 신축 복합민원처리 현황은?

2012.10.19일 건축주 신선희로부터 동·식물관련시설인 양계사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11조(건축 허가)제5항의 규정에 따라 하였습니다.

의제 허가사항인 복합민원서 (개발행위허가,구거점용허가,소방동의 협의허가, 축산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사전환경성검토협의 허가) 신청 받았습니다.

소관부서에 협의 요청한 결과 적법하다는 내용을 협의 후 민원사무처리 규정에 따라 2012.12.12일 건축허가 처리하였습니다.

Q2 풍양 양계장 신축관련 (복합민원) 해당관련부서 협의 및 조치사항은?

복합민원 협의 결과 관련 각 개별 법률이 정하는 규정에는 모두 적법하다고 협의 되어 협의 시 조건부 부여사항에 대하여 조건부를 부여하였습니다.

아울러, 신청부지가 농업 진흥구역내 농지로서 농지부서에 의견조회과 농업생산시설인 축사등(계사)은 할 수 있는 행위이나, 양계장 허가 예정부지가 집단화된 농지 중심부로 농업생산에 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하였습니다.

이는, 건축허가에 따른 법률적 검토사항이 아닌 단지 참고사항으로서 건축 허가에 따른 하자행위가 아니라고 판단 건축허가를 하였습니다.

Q3 풍양 양계장 환경영향 평가 기관 및 평가 결과 반영은?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군 계획분과 심의 결과 “영산강유역 환경청 협의결과에 따라 허가 할 것” 조건부 의결 심의됩니다.

영산강 유역 환경청 환경영향평가 결과 조건부 협의사항에 대하여서도 허가시 조건을 부여하였습니다.

Q4 풍양 양계장 신축시 시공사 위법사례 조치사항은(총괄)?

건축공사로 인한 시공사 위법사항으로는 구거무단점용, 간이화장실무단 설치, 콘테이너 가설창고 설치로 적법 조치완료 하였습니다.

☑ 풍양 양계장 관련하여 향후 이와 관련된 민원이 접수시 고흥군의 대책은 무엇인가?

☑ 풍양 양계장 준공후 태풍 등 북서풍이 불 때 닭사육으로 인한 악취 및 닭털 등 기타 부산물로 인한 오염 대책은?

☑ 풍양 양계장 준공후 폭우시 양계장 건축물 신축으로 인한 농경지 침수 대책은?

☑ 풍양 양계장 준공후 대형 관정개발로 인한 인근 지하수 고갈대책은?

☑ 풍양 양계장 준공후 고병원성AI 발생시 출입통제로 인한 영농차질 및 병충해 방제대책은?

단지, 공호, 당두마을주민들로부터 우리군 인터넷 및 집단민원 등 수차례 발생하여 건축주에 공사중지 명령 및 민원사항 해결 촉구 등 행정 지도 관리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Q5 풍양 양계장 민원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민원발생의 근원적 원인은 건축 허가 전 인근주민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점과, 양계장 운영으로 인한 AI 발생 우려, 건축으로 인한 농경지 침수우려, 환경오염 물질 발생 및 악취발생 우려, 용수개발에 따른 농경지 지하수 고갈 우려라고 사료됩니다.

Q6 풍양 양계장 준공처리 및 향후 조치사항은?

소관부서별 철저한 지도 관리로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방역 등 행정 지도를 철저히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 발생 시는 가금사육 농가에 차단 방역강화를 하고, 방역기관이나 소관부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AI 발생 시 이동제한 및 살 처분은 가축전염병예방법 규정 제19, 20, 22조 규정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및 가축질병 현장조치 매뉴얼(고흥군)에 따라 방역조치 등으로 주민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Q7 풍양 양계장 관련하여 향후 이와 관련된 민원이 접수시 고흥군의 대책은 무엇인가?

현 정부에서는 불합리한 제도나 법률이 주민생활 등에 규제하고 있다하여 규제개혁을 하고 법규정비 또는 개정 삭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축물은 우리와 아주 밀접한 관계로 연결 되었으며, 각종 인허가시 불특정 다수인의 이기주의가 주민과의 갈등관계로 변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현 법률구조와 너무나 동떨어진 괴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군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축사 등의 건축물을 신축 시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라는 군수님의 특별지시로 다수민원이 예상되는 각종인허가 처리 시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자 신중을 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군정질문 및 답변

또한, 2014.10.31일 개발행위 운영지침을 제정하기 위한 (안)을 신설하여 집단화된 농지 중심부, 도로변, 주거 밀집지역 주변에는 허가를 제한하도록 운영지침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 지침이 2014.12월중으로 제정 공포 된다면 향후 유사한 각종 인허가 처리에 대안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풍양 양계장 준공후 태풍 등 북서풍이 불 때 닭사육으로 인한 악취 및 닭털 등 기타 부산물로 인한 오염 대책은?

동 양계장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록을 필한 시설로서, 업체측에서는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재활용업체에 전량 위탁처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행 환경법령상 행정에서 취할 수 있는 행위는 가축분뇨처리와 악취, 부산물 처리실태에 대해서만 행정력이 미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가장 바람직한 오염방지대책은 사전에 현장 지도점검을 수시로 실시 해서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전예방적 차원의 지도와 점검에도 불구하고 가축분뇨와 악취, 부산물의 처리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계법에 의거 행정조치 및 사법조치를 하는 등 양계장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Q8 풍양 양계장 준공후 폭우시 양계장 건축물 신축으로 인한 농경지 침수 대책은?

양계장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고흥만 배수로로 정비하고, 집중호우로 침수피해 발생시는 배수갑문(4련, 287톤/sec)을 가동하여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와 함께 이 인접에 대한 농경지 배수를 원활히 하여 침수를 예방코자 현재 양계장 인근에 시설된 배수로를 양계장 앞 2차로 건너편에 시설된 기존 배수로와 연결 분산하여 단시간에 배수될 수 있도록 도로횡단 박스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경지 침수피해 원인규명시 사업주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명되면 사업주에게 보상 책임을 물어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농경지 침수로 인해 계분 등이 농경지로 넘쳐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회 부산물(계분) 양계 출하시(년평균 5~6회)마다 계분을 위탁처리 업소에 즉시 반출하는 등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Q9 풍양 양계장 준공후 대형 관정개발로 인한 인근 지하수 고갈대책은?

양계장 사업자인 순천시 거주 신선희가 풍양면 당두리 424번지에 농업용 목적으로 개발한 대형관정은 '14. 5. 8일 지하수법 제8조 및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1일 80톤 계획 채수량으로

신고 처리되어 '14. 8. 6일 준공되었습니다.

본 지하수는 국도27호선 인근에 개발되어 양계장까지는 약500m 정도 떨어져 있으며 현지 조사한 결과 최소 50m에서 130m 거리에 소형관정 8공이 산재하고 있으나, 소형관정은 지반 20~30m 정도의 퇴적층인 충적층에서 취수를 하고 대형관정은 지하 70~100m 정도의 암반대수층에서 취수를 하므로 취수하는 지층이 서로 달라 지하수 고갈이나 인근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본 지하수는 1일 채수량이 150톤 미만으로 지하수영향조사 대상 제외 시설입니다만, 지하수 사용으로 인근 지하수의 고갈현상이나 오염등 문제가 발생될 때는 신고취소, 공동사용명령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Q10 풍양 양계장 준공후 고병원성AI 발생시 출입통제로 인한 영농차질 및 병충해 방제대책은?

AI 예방대책으로 축사 진입간 도로에 방역초소 운영과 부직포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바 농민들의 영농에 약간의 차질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큰차질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무인 항공 방제시 다소 불편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군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열린의회
고흥군의회



의정활동 스케치



의정활동 스케치



2013 읍면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2014.10.20~10.26)



2013 읍면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2014.10.20~10.26)



2013 읍면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2014.10.20~10.26)



2013 읍면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2014.10.20~10.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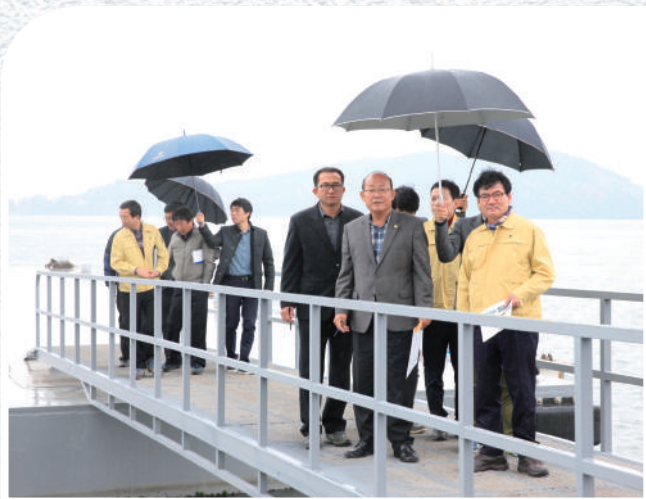


전반기 원구성현황

회기별 의안처리 현황

군정질문 및 답변

의정활동 스케치



2013 읍면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2014.10.20~10.26)



2013 읍면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2014.10.20~10.26)



2013 읍면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2014.10.20~10.26)



2013 읍면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2014.10.20~10.26)



고흥군의회 소식 GOHEUNG County Council News

의정활동 스케치



2013 읍면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2014.10.20~10.26)



2013 읍면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2014.10.20~10.26)



2015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2014.11.11~11.14)



2015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2014.11.11~11.14)



전반기 원구성현황

회기별 의안처리 현황

군정질문 및 답변

의정활동 스케치



2015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2014.11.11~11.14)



2015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2014.11.11~11.14)



2015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2014.11.11~11.14)



2015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2014.11.11~11.14)



고흥군의회 소식 GOHEUNG County Council News

의정활동 스케치



2015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2014.11.11~11.14)



2015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2014.11.11~11.14)



2015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2014.11.11~11.14)



2015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2014.11.11~11.14)



전반기 원구성현황

회기별 의안처리 현황

군정질문 및 답변

의정활동 스케치



2015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2014.11.11~11.14)



2015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2014.11.11~11.14)



제229회 제2차정례회 군정질문(2014.12.2~12.3)



제229회 제2차정례회 군정질문(2014.12.2~12.3)

의정활동 스케치



제229회 제2차정례회 군정질문(2014.12.2~12.3)



제229회 제2차정례회 군정질문(2014.12.2~12.3)



제229회 제2차정례회 군정질문(2014.12.2~12.3)



2015 세입세출 예산 특별위원회(2014.12.15~12.17)



전반기 원구성현황

회기별 의안처리 현황

군정질문 및 답변

의정활동 스케치



의원 협의회(2014.7.2)



고흥군.경희의료원 지정의료기관 방문 및 간담회(2014.10.17)



2014 고흥군.고흥군의회 송년 다과회(2014.12.23)



고흥군명칭사용 100주년 타임캡슐 매설식(2014.12.31)



고흥군의회 소식 GOHEUNG County Council News

의정활동 스케치



남도문화전V-고흥특별전(2014.7.7)



자연재배농법 도지사 현장설명회(2014.7.18)



2014년 제23기 노인대학 졸업식(2012.12.11)



「고흥군 전속예술단」제10회 정기공연(2012.12.4)



2015년도 회의(정례회·임시회) 운영계획

횟수	월일	회기일수	주요안건	비고
계		82		
제231회 (임시회)	2. 4(수) ~2. 5(목)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흥군의회 고문번호사 위촉 · 2014년도 읍면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계획승인 · 조례안 및 일반의안 	개회식 설날 (2/19)
제232회 (임시회)	3. 9(월) ~3. 17(화)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4년도 읍면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 조례안 및 일반의안 	
제233회 (임시회)	4. 14(화) ~4. 15(수)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례안 및 일반의안 	
제234회 (임시회)	5. 19(화) ~5. 20(수)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4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 · 조례안 및 일반의안 	
제235회 (임시회)	6. 23(화) ~6. 25(목)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조례안 및 일반의안 	
제236회 (제1차정례회)	7. 1(수) ~7. 10(금)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4 회계연도 결산안 · 2015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질의) · 조례안 및 일반의안 	개회식
제237회 (임시회)	9. 15(화) ~9. 16(수)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4년도 군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계획승인 · 조례안 및 일반의안 	추석 (9/27)
제238회 (임시회)	10. 13(화) ~10. 23(금)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4년도 군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승인 · 조례안 및 일반의안 	
제239회 (제2차정례회)	11. 10(화) ~12. 17(금)	3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질의) · 군정질문 · 답변 · 2016년도 세입 · 세출예산안 · 조례안 및 일반의안 	개회식
제240회 (임시회)	12. 21(월) ~12. 23(수)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년도 제2회 세입 ·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조례안 및 일반의안 	

※ 의회운영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군 민 의 / 권 익 을 / 대 변 하 는 / 열 린 의 회

고흥군의회의회는

항상 열려있습니다



고흥군의회 홈페이지 www.igoheung.com

고흥군의회에서는 군민들에게 의회를 소개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의회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민 여러분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구현을 위하여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의회방청

방청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방청을 원하는 분은 사전에 의회사무과에 전화(☎ 061-830-5508) 또는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질서유지를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방청권을 교부하여 방청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의회시설의 견학

개인 또는 기관단체가 의회 각종 시설의 견학을 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하실 수 있습니다.

견학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고흥군의회 소식지는 1992년 7월에 창간되어 수시로 발간하고 있으며, 의회동정과 의정활동 등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군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열린의회
고흥군의회

제14호 2015

군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열린의회

의회소식

주소 : 전남 고흥군 고흥읍 흥양길 40

전화 : 061)835-1228

FAX : 061)830-5595

<http://igoheung.com>